VI. 도량형제도

- 1. 옛 도량형제도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Ⅳ. 도량형제도

1. 옛 도량형 제도

1) 상고의 도량형제도

(1) 도량형의 시초

인류는 의ㆍ식ㆍ주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취하여 이용해 왔는데. 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물질들을 사용에 편리 한 크기와 필요에 알맞은 물량으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물질의 크기와 양을 항상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어 야 했다. 이러한 요구에 알맞게 만들어 낸 것이 바로 크기는 길이를 기준으 로, 물량은 기준량의 倍數값으로 판단하는 방법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초의 기준은, 장년 남자 신체의 특정부분이었다. 신체라 하더라도 그 기준을 삼는 부분이나 크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기 게 되었고. 그것은 각 지역의 인종에 따라 도량형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 다. 즉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장년 남자의 오른쪽 팔꿈치에서 長指 끝까지 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하여 1큐빗(약 50cm)이라 했는데. 오늘날 길이의 표준 치가 되는 1미터는 이 基準에 연유한 것이다. 또 중국 상고 때 기록에 의하 면, 장년 남자의 10指幅을 길이의 기준으로 취하여 指尺 1尺이라 하고, 步幅 의 2배를 1步라고 했다. 그리고 장년 남자의 양손을 모아 담은 穀物量을 물 량의 기준으로 삼아 1升(또는 1掬)이라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옛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물량을 측정하고 판단하였던 방법이, 훗날 度(길이)・量(부

^{1)《}孔子家語》王言篇・小爾雅. 《史記》夏本紀.

피)・衡(무게)이란 제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용적에서 기준을 취한 것으로 보아 상고 때의 計量法은 농경사회 사람들이 곡물을 거래하는 데 공정성을 얻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체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인체의 크고 작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지능이 발달하면서 곡물거래의 공정성이 요구되었고, 器物 제작 기술도 개발됨으로써 지배자는 단일 標準尺과 標準量器 등을 만들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통일된 도량형제도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 때 제정된 표준척 길이와 표준량의 부피는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신체 기준 그것과 비슷하거나 같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기술은 강력한 국가권력에 의해널리 시행되면서 정확하게 전수・발전하였다. 인접 후진국들은 제도나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 기준이 되었던 도량형제도도 함께 수용하여야 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도량형제도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제도나 기술의 근원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강력한 지배자가 통치하는 국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 통일된 도량형제도의 시행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舜典》의 "乃同律度量衡"이란 것이다. 舜임금은 당시까지 전래하던 길이 표준척「指尺」을 취하지 않고, 舜帝樂의 基準音律管長을 舜帝尺으로 취하여 전래의 표준량인 1승의 용적을 25立方寸이 되게 하였다. 2) 그러나 민간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었던 척도는 指尺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여러 문헌자료와 유물·유적 등을 통하여 옛 도량형의 표준척과 표준량이 장년 남자의 10指幅(또는 한뼘)과 양손에 담긴 곡물량이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箕田尺도 표준척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통일된 도량형을 시행한 것은 상당히 상고 때부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2) 기전의 할지법과 기전척

《高麗史》地理志의'箕子의 井田制'란 기록에 관하여 최초로 깊이 연구한

²⁾ 朴興秀、〈中國上古叫 度量衡制度에 關하여〉(《大東文化研究》12, 1978).

결과를 圖面까지 작성하여 밝힌 箕田遺制說이 있다.3) 이에 의하면, 含毬門과 正陽門 사이에 있는 田土를「井」자형으로 9등분 한 것이 아니라「田」자형으로 4등분하여 종횡을 각각 4개씩 배열함으로써 16개의 田을 하나의 기본형 이 되도록 구획하였다고 한다. 또한 만일 4등분된 하나를 1區라고 부른다면, 그 기본형은 4진법 수에 맞추어 64구로 割地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井田 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箕田의 遺趾는 일제 때 일본인들이 평양역을 건설하면서 파괴하였으나, 훗날 주변에 남아 있던 기전들을 정밀 측정하여 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4) 즉 "箕田에서의 도로는 종횡으로 똑같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번갈아관통하고 있는데, 그 넓은 길의 폭은 약 46척 1촌(曲尺, 13.97m), 좁은 길의 폭은 약 17척 3촌(5.24m)이 된다. 지난해 (朝鮮)總督府 技師가 실측한 데 따르면, 각 도로간의 거리는(가령 町이라 하면) 동서 9町의 평균치가 597.5呎(182.118m), 남북 7町의 평균치가 595.5呎(181.505m)으로 되어 거의 같았음을 알았다. 이 넓이는 도로까지 포함시킨 것이므로 東魏尺[高句麗尺] 500척으로 분할하여 도성을 세우려 하다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36.36cm 길이의 고구려척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 \text{ HJ} = (182.118 \text{m}) \times (181.505 \text{m}) = (181.812 \text{m})^2 = [(36.3626 \text{cm})] \times (500)]^2$

지금까지 밝혀진 고구려척인 기전척의 길이는 35.50~35.85cm에 불과하고 이러한 長尺은 알려진 바 없으며 동위척의 정확한 길이도 34.766cm로 밝혀지 고 있어, 이 설은 하나의 가상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겠다.

 $1 \text{HJ}(\text{H}) = (181.8129 \text{m})^2 \times [\{(35.510 \text{cm}) \times (6.4)\} \times 80]^2$ = $[(227.264 \text{cm}) \times (80)]^2 = 3,3055 \text{m}^2 = 3.3 \text{ha}$

오히려 위와 같이 할지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고려 문종 때의 米斛量器의 1변의 길이 35.51cm와 多寶塔의 建造尺인 35.52cm의 고구려척과 같은 유형의

³⁾ 韓百謙、《久庵遺稿》上、箕田遺制說、

⁴⁾ 藤田元春、〈箕子の井田〉(《尺度綜考》, 刀江書院, 1929).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기전의 1田은 殷 代의 도량형제도에서의 4진법의 길이 단위인 64촌, 즉 6척 4촌인 227.26㎝를 거리단위(이것을 1步 또는 1竿長이라 한다면)로 한 4방 80竿이 되게 할지된 것이 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사방 1간인 넓이 40.96평방척을 1竿積, 사방 4간이 만드는 넓이를 1畮(18畮라고 가칭한다)라 한다면, 다시 한 가구에 분급되었을 1區의 넓이는 100畮(畝)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은 1600평방간(8263.8㎡)이 되고, 1田의 넓이는 6400평방간(3,3055㎡)이 되어, 모든 단위수들이 殷代의 도량형단위제도와같이 4진법과 10진법의 복합단위수가 된다. 또 1전이 차지하였던 도로의넓이도 10분의 1이 되므로 1구의 실질적인 경작농토의 넓이는 1400평방간(7437.4㎡)이 되며, 기전의 기본형의 넓이는 그것의 64배, 기전의 총넓이는 640배에 가까워진다. 이것과 비슷한 量田法이 근년에 이르기까지 山東省益都縣에서 실시되었는데, 거기서의 1竿長도 동일한 길이이었음이 확인되었다.5)

이러한 이유에서 기전은 韓百謙의 해석대로 殷田 제도를 축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정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전척이 삼국시대의 官尺이었던 고구려척으로 일컬어져 온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통일된 도량형제도를 실시하였던 시기가 기전의 개설 때보다 내려올 수 없음도 명백하다.《孟子》에보이는 "殷人七十而助"에서 '七十'은 1구가 사방 84간인 7056평방간의 100분의 1인 1무 넓이를 가리킨다. 이 때의 실전은 사방 80간인 6400평방간이 되며, 나머지 4간 중 1간은 소도로인 소위 1畝道路幅에, 3간은 3畝路幅에 충당되었을 때의 넓이로서 도로는 10분의 1이 되게 된다. 이 4구인 1전을 정자형으로 9등분 한다면 그 넓이가 정확히《禮記》王制篇에서의 當今의 100畝와같게 된다. 그러므로 삼국시대의 관척이었던 이른바「高句麗尺」은 기전척이原尺이며,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기본척이 되어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정전법은 춘추전국시대의 도량형 개혁 때 생겨난 것이 확실시되고있다.

⁵⁾ 朴興秀,〈箕田考〉(《道原柳承國博士 華甲記念論文集》, 1983).

(3) 통일신라의 결부속파법과 10지척

통일신라 때 실시되었던 結負束把法은 고려때는 물론 조선 세종 때까지도 전국적으로 실시된 양전법이었다. 이 때 밝혀진 양전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6)

量田尺=壯農夫 10指幅(指尺)=19.42cm

1把길이=64指=指尺 6尺 4寸

1把積(줌)=四方 指尺 6尺 4寸=指尺 40.96平方尺

1束(단)=10把=指尺 409.6平方尺

1負(점)=10束=四方 指尺 64尺

1結(먹)=100負=四方 指尺 640尺

- =四方 下田尺 35.55步
- =指尺 40,9600平方尺
- =1,5447m²=世宗 때 中朝畝 59畝 112步≒1.5ha

결부속파법은 正方形田으로 양전하는 것으로서 4진법과 10진법의 複合數형의 단위제도였으나, 그것은 기전의 割地法에서와는 별개의 제도였다고 볼수 있다. 또한 그것은 井田法과 阡陌田法에서의 양전법으로 밝혀진《예기》왕제편의 步畝法과 거의 비슷하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왕제편에서는 周尺을 量地尺으로 삼아 6척 4촌의 길이를 1步, 사방1步積도 1보, 100보를 1무, 100무를 1夫라 하였는데, 결부속파법에서는 步・畝・夫를 把・負・結이라 하였다. 파・속・부・결은「줌」・「단」・「짐」・「먹」등으로 일컬으며, 특히「먹」이란 단위명은 한 가구의 양식을 얻기 위해 給田된넓이란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정전법은 춘추시대 말기 전국시대 초엽에 齊가 도량형제도를 개혁할때, 殷田의 1田인 4區를 井자형으로 9등분한 데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商鞅에 의하여 秦에 도입되어서는 천백전법으로 되었으나, 量地尺인 周尺이 신장됨으로써 이 제도들도 진시황 26년부터 1보가 주척 6척으로개혁되어 없어졌다. 우리나라가 결부속파법을 중국에서 도입하였다면 이

⁶⁾ 朴興秀、〈新羅 및 高麗의 量田法에 關하여〉(《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篇-》 11, 1972).

시기에 수용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도량형제도의 특성에 따라 양전 척은 주척으로, 양전의 단위명도 보·무·부로 불려져야 한다. 물론 통일신 라 때 학자들 사이에선 결・부・파를 중국식으로 경・무・보로 부르기도 했으나, 정전법에서의 畝・夫와 漢 이후의 畝・頃制도 면적 사이에는 크게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호칭은 본래의 명칭이 아니라 중국제도를 모방한 학 자들의 그릇된 호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러한 양전법은 본시 우리나라의 상고시대의 제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첫째 중국에서는 周公 때에 상고시대의 指尺을 周의 官尺(길이 19.496 cm)으로 제정하였다. 후인들은 이 관척을 주척이라 불렀으므로 장년 남자의 10指幅이란 호칭은 주척이란 호칭보다 앞선 명칭이라는 점, 둘째 중국 상고 시대에 길이의 표준 10지폭과 양의 기준량으로서 장년남자가 두 손을 모아 담을 수 있는 곡물량인 1升(또는 1掬)은 당시 도량형의 기준이었는데, 이 제 도가 우리나라 상고시대의 그것과 같았던 점, 셋째 고구려와 신라의 관척이 었던 고구려척은 기전척의 傳授尺임이 분명한데, 오랜 옛날부터 標準量器로 전해 온 米斛量器가 기전척의 1입방척이었던 것으로 보아, 기전이 개설되었 을 시기에 기전척을 기준으로 하여 도량형제도를 통일하여 실시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양전법도 기전에서와 같이 기전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양전법에서는 실제로 상고시대의 길이 기준이었던 10지폭 을 양지척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기전이 개설될 당시에 10지폭을 기준한 도 량형제도와 결부속파법이 실시되고 있어 그것들을 改量田하기가 곤란하므 로 그대로 사용하였던 결과로 생각된다는 점, 넷째 결부속파법에서 사용 된「먹」・「짐」・「단」・「줌」이란 명칭은 곡물의 수확량을 나타내는 이름이었 다. 즉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한 가구의 양식이 대략 장년 남 자의 100짐 정도에 해당되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도량형제도가 정비되고 전토의 넓이도 이에 따라 10지폭을 기준으로 그 단위를 제정할 때 옛 수확량의 기준이 되고 있었던 줌ㆍ단ㆍ집ㆍ먹으로 면적의 단위명칭을 정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국에서의 양전 단위에는 보이지 않는 束 단위까지도 만들어졌던 것으로 여겨 진다는 점 등이다.

(4) 상고의 도량형

가. 척 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고 때 標準尺 길이는 장년 남자의 10지폭이었는데, 조선 세종 때까지 전해진 下田尺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길이는 19.42cm가 된다. 이 길이는 주공의 주척 19.496cm보다는 조금 짧다. 또 기전이 개설된 당시부터 표준 관척이 되었을 기전척인 고구려척은 35.510cm이다. 이기준척을 量器尺으로 하여 만들어졌을 고려 문종 때의 米斛量器를 세종 때의 표준량으로 환산한다면 35.498cm의 길이가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실측과정에서 생길 수 있었던 오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길이를 평균했을 때 기전척은 35.504cm가 되므로 원래의 기전척 길이를 35.510cm로 보고자 한다. 삼국은 이 척도를 똑같이 관척으로 사용하였는데, 여러 유지와 유물의 실측에서 확인되고 있다. 즉 통일신라 때 건조된 경주불국사 다보탑의 실측에서는 35.52cm 길이로 밝혀졌으며, 백제의 목수들에의하여 건조된 일본 四天王寺의 실측에선 35.576cm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밖에 서울 방이동의 백제 석실고분의 석실은 길이 23.25cm의 王莽尺의 신장척으로 볼 수 있는 척도로써 만들어졌고, 또 武寧王陵은 20.81cm 길이의 주척으로 보아야 할 척도로써 만들어졌음이 밝혀져, 고구려척 이외의 척도들 도 중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人身尺으로 보아야 할 한 발[尋], 한 길, 한 걸음폭 등도 길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상고 때의 인신척이 근세까지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표준량과 표준량기

가) 표준량기의 용적과 양기척

고려 태조는 '宜用舊法'이라 밝히면서 도량형제도는 물론 조세법까지도 통일신라 때의 제도를 계승하였는데.⁸⁾ 조선의 태조도 고려의 도량형제도와 조

⁷⁾ 藤田元春、〈四天王寺と法隆寺の地割の差〉(앞의 책), 429쪽.

^{8)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趙浚上書.

세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따라서 세종 때의 米斛 표준량은 통일신라의 표준량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량이 정확히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箕田尺을 기준으로 하여 1입방척이 되게 만들어졌던 표준양기가 전해졌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고려 문종 때의 미곡양기였다. 《고려사》에서는 米斛器를 1입방척이 아닌 1척 2촌의 입방체 용적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기전척 길이를 唐大尺의 길이로 量器尺을 고쳐서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결과 세종 때 營造尺 길이가 31.22cm로 밝혀졌는데, 이에 근거하여 문종 때의 미곡양기의 용적을 계산하면 영조척 1470입방촌, 한 변의 길이가 영조척 1尺 1寸 3分 7釐로 계산되므로 기전척 길이 35.497cm로서 한 되의 용적이 596.4cm가 된다.

지금 이 표준량기의 양기척 길이가 제조 당시에 기전척 길이와 같았다고 가정한다면, 한 변의 길이는 영조척 1척 1촌 3분 7리 4모가 되어 4모의 차이가 있게 된다. 4모까지를 포함시킨다면 미곡기 용적은 영조척 1471.43입방촌이 되므로 한 되의 용적은 19.619입방촌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4모의 길이까지가 실측되었다 하더라도 세종 때에는 1승을 영조척 19.6입방촌으로 하여야 했을 것이므로, 표준량기로서의 미곡량기는 한 변의 길이를 箕田尺 1척인 35.510cm가 되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 미곡량기는 기전척을 기준척으로 하여 도량형제도를

⟨표 1⟩

韓國의 上古尺度

H 46		1尺 길	이(cm)		de 3ml 44m
尺 種	상 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 려	實測物
kt	35.510	35.510	35.510	35.510	平壤 箕田
第田尺	35.51	35.51	35.51	35.51	標準米斛量器
(高句麗尺)			35.52	35.52	佛國寺 多寶塔
10指尺 (量田尺)	19.42	19.42	19.42	19.42	高麗 下田尺
周尺		20.81	20.8~20.54	19.42	統一新羅石造物 및 武寧王陵
百濟尺		23.25			芳荑洞 石室古墳
唐大尺				29.592	米斛量器

통일할 때 만들어져 전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일신라 때 한 되의 부피는 597㎡였으며, 75升이었던 표준량기의 용적은 4,4776.7㎡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도량형제도의 통일과 표준량

고려 문종 때까지 전수된 표준량기인 미곡량기의 양기척이 기전척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箕田이 개설될 그 당시에는 기전척을 標準尺으로 한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곡물량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섬」[石]을 널리 사용하였다. 그러한 관습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양에 있어서는 도량형제도가 개혁될 때마다 변화되었다.

농민들 사이에서 볼리어온 「섬」이란 곡물을 담기 위해 볏집을 엮어서 만든 양기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용기 속에 채운 곡물의 양으로도 일컬어온 명칭이다. 이와 같이 「섬」이란 이름은 선사시대에 곡물을 다루기 위해 섬을 만들어 곡물을 채워 운반 저장한 데서 시작되었던 명칭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처음에 한 섬이란 물량은 장년 남자가 다루기에 편리한 무게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양은 점차 정확성을 띠면서 일정한 곡물의 기준량으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단위량이 「石」이란 명칭으로 불린 것은 한자를통용하기 시작하여 중국의 단위명이 도입된 때로부터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일적인 도량형제도가 실시된 것은 장년 남자의 양손에 담긴 곡물량을 한 되, 섬에 담긴 곡물량을 한 섬으로 하고, 장년 남자의 1指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길이의 표준을 10指로 했을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제도로 제정된 것이 결부속파법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길이 기준=손가락 굵기물량기준=한 되(약 300cm)길이 표준=10指(19.4cm)한 말=열 되양전용 길이=64指한 섬=열다섯 말(약 45리터)

여기에서 한 섬은 10진법 수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섬」이란 단위는 10진법에 의한 통일된 도량형제도를 실시 하기 이전에 통용되었기 때문에, 그 양을 10진법에 맞추면서 한 섬이 15말로 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상고시대에 1승은 313㎡, 1두=10승, 1석=10두로 10진법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石量이 다른 점으로보아 우리의 상고시대 도량형제도는 중국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다.

우리나라 상고시대에는 또 하나의 통일된 도량형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준척=箕田尺(35.510cm)

=箕田尺 6尺 4寸

1升(되)=298.5cm

1斗(말)=10升

1石(付)=15斗(4,4776.7cm)=標準量器 容積

상고시대 도량형의 특징은 1石을 기전척의 1입방척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고 1승의 양을 298.5㎡로 정확하게 통일시킨 점이며, 이 때 만들어진 표준양기는 잘 보존 전수되어 기전척인 고구려척을 통일신라 말까지 보존할 수 있게 하였고, 아울러 표준량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었다.

다. 무게 단위로서의 칭량

《經國大典》度量衡記에서는 衡量 단위에 釐・分・錢・兩・斤이란 단위 이외에도 稱이란 단위량이 세종 때까지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9) 그런데 중국의 옛 도량형제도를 밝히고 있는《漢書》律曆志에서의 형량 단위에는 銖・兩・斤・鈞・石의 다섯 가지 단위의 이름이 있을 뿐 稱이란 단위는 보이지 않는다.10)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무게 단위들은 주나라 말도량형을 개혁한 이후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小爾雅에서는 "稱이란 단위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15斤에 해당하는 秤이란 것과 상통한다"고 했을 뿐이다.

한편《史記》의 夏本紀에 "聲爲律 身爲度 稱而出"이란 것이 보여, 人身尺과 더불어 상고 중국에서도 칭이란 무게 단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9)《}經國大典》권 6, 工典 度量衡.

^{10) 《}漢書》 권 21 上, 律曆志.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세종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단위량「칭」은 大稱・中稱・小稱의 세 종류로 구분되었고, 대칭은 100斤, 중칭은 7근 혹은 30근, 소칭은 1근 혹은 3근이라 하여 그 실상을 알아내기 힘들며, 중국에서의 15근과도 차이가 있다. 이 단위량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의연구 과제이지만,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무게 단위를 가진 도량형제도가 상고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상고이후 문무왕 21년(681)의 도량형 개혁 때까지 도량형제도를 개혁한 흔적을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문무왕 21년의 도량형 개혁

《三國史記》와《三國遺事》를 보면 중국의 도량형 단위인 步・丈・里・分・兩・斤・升(斗)・斛 및 畝・頃 등이 흔히 쓰이고 있다. 이는 삼국시대 중기이후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조공과 상거래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그러한 단위량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어느 시대의 어떠한 제도를 반영하는 단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 문무왕의 遺詔에는 불편하게 여겨왔던 도량형제도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¹¹⁾ 통일신라와 고려 때의 제도로 보아서 이 때 개혁된 도량형제도는 里步法과 儀禮의 기준척이 되었던 周尺 및 唐大尺이 도입되었을 것이며, 기준량이 되어 온「한 되」는 본래의 양을 두 배로 하여 唐의 1升量인 655㎡와 비슷하게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 한 섬의 양도 관습에 따라서 새로운 표준량으로 삼아 15두로 증량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혁으로 말미암아 일반 농민들 사이에는 섬[石]량의 혼돈으로 인한 큰 혼란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개혁으로 섬을 크게 만들어야하였으므로 「섬」에는 큰 섬과 작은 섬이 있게 되고,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큰 섬량을 1碩으로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본래의 되・말・섬들은 작은 되, 작은 말, 작은 섬으로 새로운 양기

^{11) 《}三國史記》 권 7, 新羅本記 7, 문무왕 21년.

들은 큰 되, 큰 말, 큰 섬으로 구분되었을 것이나, 관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租穀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점차 新量制度로 단일화되어「碩」도 石으로 통용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옛 한 섬의 양은 옛부터 개혁 이후까지 줄곧 표준양기가 되어야 했으므로 중국의 10 사량의 단위인 斛을 도입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때 升 이하의 적은 단위량도 중국제도를 본떠서 제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分 =0.1合 1合(홈) =0.1升 =60mℓ 1升(되) =10合 =597mℓ 1斗(말) =10升 =5970mℓ 1斛(작은 섬)=7斗 5升=4,4777mℓ 1碩(큰 섬) =15斗 =8,9553mℓ

이러한 量制가 개혁될 때, 물론 衡量에도 개혁이 있었을 것이다. 이 때까지 통일된 도량형제도로서의 단위량에는 稱量이 있었을 뿐 斤과 같은 양들은 중국의 형량들을 도입하여 중국식으로 제정되어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당시 당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1斤重은 668그램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그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衡量單位도 1斤=16兩=668그램, 1兩=24銖, 1銖=10分(文)이란 제도와 10進法 제도인 1貫=100兩, 1兩=10錢(絫), 1錢=10分, 1分=10釐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지만, 세종 때까지 전해진 단위명은 1전=10분, 1냥=10전, 1근=16냥이었다. 만일 문무왕 때 제정된 형량단위가 세종 때까지 전해진 것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銭=10分=4그램 1兩=10銭=40.1그램 1斤=16兩=642그램

따라서 형량의 표준량도 당의 그것과 같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 문무왕때 제정된 1근을 642그램으로 가정한다면 당시에 있어서 본래의 형량 1칭은약 475그램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고려의 도량형제도

(1) 문종 7년의 양 체제 개혁

고려의 성종은 통일신라 때부터 토질이 비옥하거나 척박한 데 대한 차이 가 없이 일률적으로 1負에서 수확된 곡물 3승씩의 조세를 내게 하던 조세법 을 고쳐서, 1결의 수확고가 7~10석까지의 田은 하등전, 11~14석까지의 전 은 중등전, 15~18석까지 전은 상등전으로 나누고, 그 수확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로서 하등전에서는 2석, 중등전에서는 3석, 상등전에서는 4석 씩을 거두어 들이는 3등급의 차등조세법을 실시하였다.12) 이와 같이 토질에 따른 차등조세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의 모순된 조세법을 바로잡고 增稅 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실행과정에서 차등조세율에 따른 각 종 세액 계산이 크게 복잡하게 되어. 조세량의 산정이 부정확할 염려가 있었 다. 이에 문종은 전토의 면적 차이에다 차등세율을 두어 옛 조세법과 같이 1 부에 3승씩의 조세를 내게 하는 이른바「同科收租法」시행의 사전 작업으로 서 量制를 먼저 개혁하였다. 즉 옛부터 전해 온 표준량기 1斛器를 米斛 1斛 量器로 한 채 이것과는 용적을 달리한 大・小豆斛과 末醬斛. 稗租斛의 4종류 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대·소두곡을 제외한 나머지 세 종류는 거기 담긴 곡물의 값이 糙米 1곡 값과 꼭 같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러한 量體 制는 중국 옛 기록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른바「齊價量體制」라 할 수 있는 제도였다.13)

여기에 비해 대·소두곡의 용적은 다른 量器들 곡물가의 절반값이 되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대·소두곡의 용적만을 절반값이 되게 만든 것은 동과수조법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1부에서 3승의 조를 거두어들일 때 水田租는 미곡양기로 糙米 3되를, 旱田租는 대·소두곡 양기로 대·소두 3되를 바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내용은 《世宗實錄》에도

^{12)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租稅.

¹³⁾ 朴興秀, 〈新羅 및 高麗 때 量制度와 量尺에 관하여〉(《科學技術研究》 5, 1977).

〈丑 2〉

한국 고대 量制度 일람표

양 기	단	상고	2시대		방 21년]전		· 21년~ 문종 7년		7년~]종 28년	표준양기
종	위	용적	용적	용적	용적	용적	용적	용적	용적	長・廣・高
류	명	(升)	(mℓ)	(升)	(mℓ)	(升)	(ml)	(升)	(mℓ)	
	合	ı	-	ı	ı	0.10	60	0.10	60	상고 때 箕田 尺 1尺 문 종 7
米	升	1.00	299	1.00	299	1.00	597	1.00	597	尺 1尺 せき / 년 후 唐大尺
斛	4	10.00	2985	10.00	2985	10.00	5970	10.00	5970	1尺 2寸=35.51
量	斛 (原器)		4,4776.7	150.00	4,4776.7	75.00	4,4776.7	75.00	4,4776.7	cm
	石	150.00	4,4777	150.00	4,4777	150.00	8,9553	150.00	8,9553	
	合	_	_	_	_	_	_	0.10	45	唐大尺
大・	升	_	_	_	_	_	_	1.00	447	1尺 9分 (29.59cm)
小	斗	_	_	-	_	-	_	10.00	4474	,
豆斛量	斛	-	_	-	_	-	_	75.00	3,3555	
4.	石	_	_	_	_	_	_	150.00	6,7110	
	合	_	_	_	_	_	_	0.10	93	唐大尺
末	升	_	_	_	_	_	_	1.00	928	1尺 3寸 9分
醬斛	斗	_	_	_	_	_	_	10.00	9278	
量	斛	_	_	_	_	_	_	75.00	6,9586	
	石	_	_	_	_	_	_	150.00	13,9172	
	合	-	-	-		-		0.10	105	唐大尺
稗	升	1	_	_		1	_	1.00	1053	1尺 4寸 5分
租斛	<u></u>	_	-	1	-	1	-	10.00	1,0532	
量	斛	_	_	_	_	_	_	75.00	7,8992	
	石	-	_	-	_	-	_	150.00	15,7984	
量	體制		單	一量	制		4종	의 齊價	量制	

자세히 보인다.¹⁴⁾ 이 네 종류 곡미들의 용적에 대한 實寸數가 기록되었다고 하나, 그 量器尺이 어떠한 척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것은 고구려 척이 아닌 길이가 29.592cm의 唐大尺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 문종의 3등전척

고려 문종은 성종 11년(992)에 제정된 3등급 조세법이 복잡하므로 이를 혁파하고, 옛 조세법처럼 전토의 면적을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율을 단일 화한 同科收租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종 7년에는 「齊價量制」로 양 제를 개혁하고 23년에는 면적을 3등급으로 나누는 改量田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실시된 양전법은 길이 비율이 장정의 농부 손가락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즉 上田尺:中田尺:下田尺의 비율이 각각 20指: 25指: 30指가 되도록 세종류의 양전척을 만들었던 것이다.15) 이러한 양전척을 중국에서와 같이 6척 길이를 각 등전의 1步로, 사방 3보 3척의 넓이를 각 등전의 1負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하등전 1결의 면적은 하등전척을 기준으로 하여, 下田 1결=下田尺 {(3步 3尺)×(10)}²=下田尺(210尺)²=10指尺(630尺)²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 하등전 1결에 대한 양전은 이와 같이 시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1결의 사방 길이는 33보라는 기록은 있지만 1부의 넓이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16) 그러나 그것은 실제의 전토 넓이와 달랐으므로 후일 조선 태종 5년(1405)에 "1부의 넓이를 사방 33보의 10분의 1인 3보 3분으로 하지 않고 3보 3척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하고, 1부를 3보 3분인 3보 1척 8촌이 되게 전국의 田積을 고쳤다. 이에 1결이, 1結差=(210尺)²-(198尺)²={(4,4100)-(3,9204)}尺²=4896尺2=12負 4.9束으로서, 12부 4속씩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12.4%의 增稅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종 10년의 改量田은 1부를 3보 3척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의 100 배가 되는 1결을 사방 35보로 고친 것이었다.¹⁷⁾ 즉 下田 1結=下田尺(35步)²=下田尺(210尺)²=周尺(210×2.8尺)²=周尺(1,3829)步=세종조 畝法 57畝 149 步였다. 그러나 10指를 指尺 1尺으로 보았을 때, 1把는 사방 63指인 지척

^{14) 《}世宗實錄》 권 104. 세종 26년 6월 갑신.

^{15) 《}世宗實錄》 권 49, 세종 12년 8월 10일.

^{16) 《}高麗史》 권 78, 食貨 1, 田制 문종 23년.

^{17) 《}世宗實錄》 권 42, 세종 10년 10월 3일.

〈丑 3〉

한국의 고대量田法과 量田尺表

	상고~고려 초	문종 23년	· 이후의 양전법	태종 5년	세종 10년의
	때 양전법	기 록	실 제	개량전법	개량전법
量田制	壯農夫 10指		壯農夫 10指	10指	10指
基準尺	(19.42cm)		(19.42cm)		(19.42cm)
量一下	_	30指	30指=3尺	指尺 3尺	指尺 3尺
田卜中	_	25指	25指=2尺 5寸	指尺 2尺 5寸	指尺 2尺 5寸
尺上上	_	20指	20指=2尺	指尺 2尺	指尺 2尺
1把長	64指	6尺	6尺		
1把	方 64指				
	$=(1.24m)^2$				
	$=1.51\mathrm{m}^2$				
1負	方 640指		方 3步 3.33尺	方 3步 1尺 8寸	方 3步 3尺
	$=(12.4m)^2$		$=154.5\mathrm{m}^2$	$=133.1\mathrm{m}^2$	$=149.7\mathrm{m}^2$
	=154.5 m²				
1結	方 640指	方 33步	方 35.55步	方 33步	方 35步
	=1,5447 m²		$=1,5447\mathrm{m}^2$	$=1,3307\mathrm{m}^2$	=1,4968 m²
下田 1結	1,5447 m²		1,5447 m²	1,3307 m²	1,4968 m²
中田 1結			1,0727 m²	9241 m²	1,0394 m²
上田 1結			6865 m²	5914 m²	6652 m²
租稅率	租 30斗		水田糙米 30斗	水田糙米 30斗	水田糙米 30斗
(1結)	1年 30千		早田黄豆 30斗	早田黄豆 30斗	早田黄豆 30斗

사방 6척 3촌이 아니라 6척 4촌(4進法數)이 된다. 이것을 하전척으로 표시했을 때 본래의 1결은, 指尺(640尺) 2 =下田 $\left(\frac{640}{3\times6}\,\mathcal{P}\right)^2$ =下田尺(35.55步) 2 으로서 사방 35보 5.555분이 되고, 또 1부는 3보 3.333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종이 개량전했을 때 1부를 3보 3척으로 하고 그 이하의 치수는 버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문종이 동과수조법을 위해서 개량전하였을 때, 1결 면적의 기준이 되었을 옛 1결을 하등전 1결로 정하고, 중등전과 상등전의 면 적은 옛 1결을 각각 1결 44부와 2결 25부로 한 계산을 통하여 개량전이 실 시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땅을 측량하여 면적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오직 下等田尺만으로써 실측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하등전척 1척은 대 략 세종 때의 周尺 2척 8촌으로 환산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朴興秀〉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신라 문무왕 21년에 개혁된 도량형제도는 고려로 전승되었고, 다시 조선에 전해졌다. 또한 量制의 표준량은 옛부터 전해온 標準量器를 통해서 정확하게 세종 때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므로 고려 문종 때 개혁된 齊價量制는 세종 때의 양제가 되었으며, 무게의 표준도 고려 때부터 전해 온 工曹의 저울추를 표준으로 삼았으나, 척도만은 정확한 표준척이 없어 그 길이가 매우 문란하였으므로 새로운 표준척을 제정 통일하게 되었다.

1) 척도의 통일

조선이 건국된지도 30여 년이 경과되어 나라 안팎이 안정되게 되자 여러가지 제도들을 정확히 확립시킬 필요가 있었다. 세종은 태종 때에 吉禮序禮와 각종 의식을 제정하였던 許稠에게 洪武舊制와 東國儀禮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五禮를 상세하게 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허주는 5례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표준으로서 造禮器尺을 만들게 되었다. 이 무렵 朴堧은 예약을 정돈하기 위해서 음악의 기본음과 정확한 12音律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海州産의 秬黎를 바탕으로 한 累添法으로 黃鐘尺을 만들었다.

한편 고려에서부터 시작된 同科收租法을 중국식의 頃畝法으로 고쳐 貢法을 실시하자는 여론으로 인하여, 경무법의 양전척이 되고 있었던 정확한 周尺의 표준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세종은 집현전에 표준이 될 척도를 제정하도록 명하여 가례의 주척을 새로이 고쳐 標準周尺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때 제정된 것으로는 새로운 표준척으로서의 營造尺과 縱忝尺, 橫忝尺 등이었는데, 이 3종의 척도는 명나라에서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척

도들은 세종 12년(1430)에 제정되었으나, 관청과 민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布帛尺의 표준은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공조에서는 재가를 얻어 전국의 관부로 하여금 그 지방의 표준척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백척을 대나무로 만들어 京市署로 보내게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포백척을 제정하여 각 관부에 분급함으로써 포백척도 통일하였던 것이다.1)

周尺은 주공이 새로이 경무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옛부터 많이 사용되어 온 10지폭의 지척을 量田用으로 제정하였던 주나라의 관척으로서, 그 정확한 길이는 19.496㎝였다. 그러나 新의 王莽 때 劉歆은, 중국음악과 도량형이 舜임금의「同律度量衡」제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근거로 하여, 중국의 표준척은 주척이 아니라 중국음악의 기본임인 黃鐘音을 내는 黃鐘律管長임을 밝혔다. 그 이후로 모든 樂理學者들은 劉歆 銅斛尺만을 표준척으로 여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척은 실질적으로 양전과 里程用尺으로 사용되면서도 기록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周禮》의 기준척이었던 주척은 가례와 더불어 私尺으로 전해 내려와 우리나라에서도 禮制의 기준척이되었음을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2) 즉 건국 초에는 가례에 있는 司馬公(光)의 石刻周尺을 바탕으로 했으나 그것이 오래되어 오차가 심하므로 洪武癸酉年(1393)에 허조가 陳友諒의 아들 陳理家에게서 얻은 주척, 원나라 중추원사 金剛이 얻은 象牙周尺, 가례에 있는 사마공의 석각주척 등을 자료로 하여 집현전에서 가장 정확한 주척을 만들었던 것을 밝히고 있다.

〈丑 1〉 諸尺關係表

(단위:尺)

							<u> </u>
기본척 관계척	黃鐘尺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縱黍尺	横黍尺	布帛尺
周尺	0.6	1.000	0.663	0.73	0.7	0.789	_
營 造 尺	0.899	1.499	1.000	1.09	1.15	1.18	_
造 禮 器 尺	0.825	1.38	0.92强	1.000	1.7	_	_
布 帛 尺	_	2.246	_	_	_	_	_
一等量田尺	_	4.775	_	_	_	_	2.126

¹⁾ 朴興秀, 〈李朝尺度에 關한 硏究〉(《大東文化硏究》4, 1967).

^{2)《}增補文獻備考》 권 85, 禮考.

이 때 제정되었던 각종 표준척의 길이 사이에는 〈표 1〉에서와 같은 관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백척과 세종 26년에 제정된 一等量田尺의 길이를 합하여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면 〈표 2〉에서와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세종 때의 표준척으로 나머지 척도들의 길이도 정확히 밝힐 수 있게 되었다. 《磻溪隨錄》에는 임진왜란과 관리들의 관리 소홀로 모든 척도들은 없어졌지만 三陟府의 포백천과 水標橋의 水位周尺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3〉 그러나 이것마저 없어져 순조가 부러진 世宗水標에서 世宗周尺을 실측함으로써 밝힌 釐正周尺記와 현재 전하는 수표교의인조 甲戌量田周尺長, 南大門樓와 圓覺寺十層石塔에서 얻은 世宗營造尺 등에서 세종 때의 표준척 길이가 〈표 3〉과 같음을 밝힐 수 있다.〈표 2〉에서 밝

〈표 2〉 세종조 諸尺度 관계의 換算値 일람표

(단위:尺)

기 본 척 관 계 척	黃鐘尺	周尺	營造尺	布帛尺	造禮器尺	横黍尺
黄 鐘 尺	1.00000	1.66864	1.11148	0.74299	1.21239	1.31499
周 尺	0.59929	1.00000	0.66610	0.44527	0.72657	0.78806
營 造 尺	0.89970	1.50128	1.00000	0.66847	1.09078	1.18310
布帛尺	1.34591	2.24584	1.49595	1.00000	1.63176	1.76986
造 禮 器 尺	0.82482	1.37633	0.91677	0.61283	1.00000	1.08463
横黍尺	0.76046	1.26893	0.84524	0.56502	0.92197	1.00000

〈표 3〉 세종 尺度의 길이 일람표

		44	세종 척도의	표준길이	경국	대전
尺		種	黃鐘尺의 단위	cm 단위	黃鐘尺의 단위	cm 단위
黄	鐘	尺	1.00000	34.700	1.00000	34.700
周		尺	0.59929	20.795	0.606	21.028
峇	造	尺	0.89970	31.220	0.899	31.195
造	禮器	尺	0.82482	28.621	0.823	28.558
布	帛	尺	1.34591	46.703	1.348	46.776
横	黍	尺	0.76046	26.388		
_	等 量 田	尺	2.86156	99.296		
甲	戌 量 田 周	尺	0.62746	21.773		

³⁾ 柳馨遠、《磻溪隨錄》 권 2, 附錄 3, 陟布帛尺圖.

혔듯이 척도 사이의 길이 관계를《經國大典》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오로지周尺만이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경국대전》에서 周尺長을 黃鐘尺의 6寸 6釐라 함으로써 세종 척도를 밝히려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는데, 《六典條例》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정정하고 있다.4)

2) 양전법의 개량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종 10년에는 1결의 넓이를 고려 때 三等田의 넓이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사방 35보로 改量田하였다. 그러나 同科收租法이 중국의 貢法만 못하다 하여 세종 18년에 공법을 입법하여 다음해부터 경상·전라·경기에서 頃畝法으로 개량전을 시행하였다. 이 때의 양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였다.

1歩 길이=周尺 5尺 1歩 면적=方周尺 5尺=周尺 25尺² 1畝=240歩=周尺 6000尺² 1頃=100畝=周尺 60,0000尺²

위와 같은 단일면적으로써 田品을 6등분, 年分을 9등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시해 본 결과 조세를 위한 종류가 54종이나 되어 매우 복잡한데다 부패한 관리들의 행패가 심하여 국고에 들어오는 租穀의 양이 줄게 되었다. 이에 세종 26년에는 다시 옛 제도인 동과수조법으로 환원시키도록 개량전을 실시하였다. 이 때의 양전법은 전품을 6등급으로, 연분을 9등분한 것이었다. 전품을 6등급으로 나눈 방법은 당시 하등전 1결의 넓이가 57무 149보였으므로, 이것을 57무로 계산하여 여기서 上上年에 上上田이면 벼 80석(糙米 40석)이, 下下田이면 벼 20석이 수확된다고 보고, 이 사이를 벼 12석의수확고의 차이가 있는 田을 한 등급씩 낮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각 等

⁴⁾ 朴興秀,〈李朝尺度 標準에 관한 考察〉(《素巖李東植先生華甲記念論文集-道外人間科學-》, 1981).

[《]世宗實錄》권 50, 세종 12년 10월 18일 및 권 93, 세종 23년 8월 20일.

田 1결의 넓이에 있어서는 1結租를 20두로 정하면 1등전 1결의 넓이는 종래의 하등전 1결의 2/3인 38무가 되고, 6등전 1결은 228무의 2/3인 152무가 되어 가장 알맞은 1결의 넓이가 된다고 보고, 수확고의 1/20인 20斗租의 동과수조법이 되게 정했던 것이다. 이는 1등전 1결 57무에서 조미 30두의 조세를 내게 하면 1/20조가 되므로, 1결조를 糙米 30두로 정했을 때 1등전의 넓이는 57무가 되지만, 6등전 1결의 넓이는 228무나 되어야 하므로 면적단위로서의 1결의 넓이가 너무 넓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1결의 넓이를 정하여 각 등전 1결의 넓이를 세종 周尺과 경무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等田 1結=38畝=周尺(38×6000)尺 2 =周尺(22,8000尺 2)=周尺(100×4.775尺) 2 =9859.5m'=1ha

2等田 1結=44畝 7分=周尺(44.7×6000)尺 2 =周尺(26,8200)尺 2

=周尺 $(100\times5.179尺)^2$

3等田 1結=54畝 2分=周尺(54.2×6000)尺 2 =周尺(32,5200)尺 2

=周尺 $(100\times5.703$ 尺 $)^2$

4等日 1結=69畝=周尺(69×6000)尺 2 =周尺(41,4000)尺 2 =周尺(100×6.434尺) 2

5等田 1結=95畝=周尺(95×6000)尺 2 =周尺(57,0000)尺 2 =周尺(100×7.550尺) 2

6等田 1結=152畝=周尺(152×6000)尺 2 =周尺(91,2000)尺 2 =周尺(100×9.550尺) 2

이를 다시 주척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等 量田尺 1尺=周尺 4.775尺

2等 量田尺 1尺=周尺 5.179尺

3等 量田尺 1尺=周尺 5.703尺

4等 量田尺 1尺=周尺 6.434尺

5等 量田尺 1尺=周尺 7.550尺

6等 量田尺 1尺=周尺 9.550尺

또 이와 같은 길이의 양전척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把=方 1尺

1東=10把

1負=10束=方 10尺

1結=100負=方 100尺

〈표 4〉 세종조 頃畝 및 結負束把 일람표

세종	19년 頃畝法	세종 26년	이후 結負束把法	인조 12년	이후 結負束把法
경	수 치	경	수 치	경	수 치
量田尺	周尺=20.795cm	量田尺	周尺	量田尺	甲戊周尺
			=20.795cm		21.772cm
1步	周尺 5尺	1等 田尺	周尺 4.775尺	1等 田尺	周尺 4.775尺
			=0.99290m		=1.0396m
1步積	方周尺 5尺	2等 田尺	周尺 5.179尺	6等 田尺	周尺 9.550尺
	=周尺 25尺²		=1.0776m		=2.0792m
1畝	周尺 240步	3等 田尺	周尺 5.703		
	=周尺 6000尺2		=1.189m	1把	方 1尺
	=259.46 m²	4等 田尺	周尺 6.434尺	1負	100把
1頃	100畝=周尺		=1.33795m	1結	100負
	60,0000尺 ²	5等 田尺	周尺 7.550尺		
	=2,5946 m²		=1.57002m	1等田 1結	1,0807.7 m²
					=41畝 157步
		6等 田尺	周尺=9.550	2等田 1結	1,2714 m²
			=1.98592m	3等田 1結	1,5417 m²
		1把	方 1尺	4等 1結	1,9623 m²
		1負	100把	5等田 1結	2,7020 m²
		1結	100負	6等田 1結	4,3232 m²
		1等田 1結	38畝		=1頃 66畝
			$=9859.7\mathrm{m}^2$		149步
			=2982.5坪		
		6等田 1結	152畝		
			$=3,9439\mathrm{m}^2$		
			=1,1930坪		

따라서 1등전 1把는 2등전의 0.85파, 3등전의 0.7파, 4등전의 0.55파, 5등전의 0.4파, 6등전의 0.25파나 된다. 그러므로 실제의 양전에 있어서는 1등 양전척 하나만이 사용되었다. 이 척도로 측량된 넓이는 각 등전에 따라 환산되었는데 그 환산표가 바로 田制詳定所에서 만든「田制詳定遵守冊」이다.

3) 세종 28년의 양 체제 개혁

고려 문종 때 제정된 齊價量制度는 세종 초기까지도 계속 사용되었는데. 그 네 종류의 量器尺은 모두 唐大尺이었다. 양기척은 중국에서도 점차로 길 이가 길어져 옛 양기척과 같은 길이의 당대척은 없어졌으며, 그 伸長尺이 명 나라 때에 營造尺으로 불리워지고 있었다. 조선에서도 태조 때에 이미 명나 라 영조척이 도입되어 官尺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세종 12년의 표준척에 영조척이 제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표준량을 계속 정확히 유지ㆍ 보존하기 위해서도 양기척을 세종 영조척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크기를 다르게 한 量器가 4종씩이나 있었지만, 각 시대별로 곡물가가 다양하여 이 네 종류의 양기만으로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1升의 가격비율도 동일할 수 없었다. 더욱이 부정이 생길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세종 28 년(1446)에는 양기의 체제를 바꾸어 米斛量器 하나만의 단일체제로 통일하고. 그 표준 양기척도 영조척으로 바꾸어 1두의 용적이 196입방촌이 되게 長方 體形으로 개혁했던 것이다.5) 옛 양기가 입방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방체형으 로 고친 것은 옛 입방체 양기의 용적을 그대로 영조척 길이의 입방체로 표 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세종 때에 양기의 표준을 영조척 196입방촌으로 결정한 것은, 고려의 표준 미곡양기의 용적을 정확히 전수받 고자 한 결과로 볼 수 있다.6) 따라서 세종 영조척 길이만 정확히 알 수 있다 면 우리나라 옛 표준량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세종 영조척 길이를 31.220cm로 보았을 때 세종 量制度는 〈표 5〉에서와 같이 되며, 통일신라 때 1승 즉 고려 문종 이후의 미곡 1승은 597cm가 되고,

^{5) 《}世宗實錄》 권 113, 세종 28년 9월 27일.

⁶⁾ 高麗때 米斛量器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35.510cm로 보아야 했으므로, 길이가 31.220cm의 世宗 營造尺으로 측정한다면 $\frac{35.510}{31.220}$ =1尺 1寸 3分 7釐 4毫가 되므로 米斛의 容積을 營造尺으로 表示하면 1斛=7斗 5升=(11.374寸)³=1471.43寸³, 따라서 1斗= $\frac{1491.43}{7.5}$ 寸³=196.1907寸³=196寸³이 되었기 때문에 寸單位量까지만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丑 5〉

세종 때 斛斗升슴의 용적

(영조척 길이 31.220cm)

단 위	量	と 器記録寸	數		계산된 용적		비고
量器名	길이(寸)	넓이(寸)	깊이(寸)	寸3	cm ³	리터	
合	2.00	0.70	1.40	1.96	59.642	0.060	
升	4.90	2.00	2.00	19.6	596.424	0.596	
<u></u>	7.00	7.00	4.00	196	5964.235	5.964	
小斛(平石)	20.00	10.00	14.70	2940	8,9463.53	89.464	15두
大斛(全石)	20.00	11.20	17.50	3920	11,9284.71	119.285	20두

세종 때 1승은 596.4㎡가 되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종 때에 통일된 정확한 표준량은 중앙에서 영조척 40개를 만들어 각 관부에? 지급함으로써 계속 보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4) 형량 통일과 형량표준기 황종률관

신라 문무왕 때 제정된 衡量制度는 고려를 거쳐 세종 때까지 전수되었다. 세종 3년에 공조에서는 보존하고 있던 저울을 기준으로 하여 다량의 저울을 새로 만들어 전국에 공급함으로써 衡量을 통일하였다.8) 후일 朴堧에의하여 雅樂의 기본음과 12음률을 제정하기 위해 黃鐘尺이 만들어졌다. 즉

〈丑 6〉

세종대 衡量의 크기

한위명 항	중량(그램)	비고	항 단위명	중량(킬로그램)	비고
黃鐘律官容 水 88分	35.307	黄鐘律官容積 35.320cm	J. 499	0.642	1斤
1分	0.4012		小稱 	1.926	3斤
1錢	4.0122		中稱	4.494	7斤
1兩	40.1218		十十十	19.258	30斤
1斤	641.946		大稱	64.195	100斤
1貫	4012.2		八性	04.130	100/

^{7) 《}世宗實錄》 권 114, 세종 28년 11월 4일.

^{8) 《}世宗實錄》 권 13. 세종 3년 8월 18일 및 권 18. 세종 4년 12월 29일.

《律呂新書》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황종척으로 길이 9寸, 內徑 3分 4釐 6 毫의 黃鐘律管을 만들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의 무게를 표준저울로 88分이 되게끔 실측하여 이로써 저울추를 만들어 형량의 표준으로 삼게하였다. 9 따라서 세종 때의 황종율관은 그 당시 음악의 기본음의 기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량의 표준 原器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6〉은 위에서 살핀 세종대의 형량을 정리한 것이다.

〈朴興秀〉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세종 때 통일된 표준척들은 관리 소홀로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周尺은 성종 때 이미 그 길이가 신장되어《經國大典》에 보이는 것과 같은 오차가생겼으며, 임진왜란을 겪는 사이에 三陟府의 布帛尺을 제외한 모든 표준척은 없어졌다. 인조 때 제작된 一等量田尺은 포백척으로 1촌씩 길어져 양전 면적도 약 10% 정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척이 문란하게 되자 계량법에 있어서도 斗升量을 고봉으로 계량하게 되어, 영조 때 兪拓基는 삼척부의 포백척을 기준으로 하여 세종 척도를 복원하려 하였으나 전국적인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순조 때에는 《경국대전》의 周尺長의 잘못을 고쳐《六典條例》에 밝혔으나 표준척의 문란을 바로잡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척의 문란은 결국 광무 6년(1902)에 平式院에서 도량형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어느 정도 진정되었던 것이다.

1) 표준척으로서의 곡척 도입

광무 6년 도량형제도를 개혁할 때 미터법을 도입하면서 표준척 1척을

^{9)《}經國大典》 권 16, 工典 度量衡.

624 VI. 도량형제도

10/33m로 하고 이 척도를 原尺이라 하여 일본의 曲尺을 우리나라 표준척으로 제정하였다. 또 慣例를 살린다는 뜻에서 주척장을 곡척 6촌 6분이라 했는 가 하면 포백척은 곡척 1척 7촌이라 하고, 관례의 결부속파법과 里程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1)

1步=周尺 6尺

1間=周尺 10尺 1鍵=10間

1里=周尺 2100尺=350步=420m

1息=30里

1把(会)=方周尺 5尺=1平方m

1束(단)=10把

1負(점)=100把

1結(円)=100負=方 100m=1ha

그러나 일본 陸地測量部는 전국을 삼각측량하여 지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는 데 전래의 결부속파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일본식 단위제도를 채택하였다.

1間=曲尺 6尺

1坪(步)=方 曲尺 6尺

1畝=30坪(歩)

1段步=300坪

1町歩=100畝

그 결과 표준적은 일본의 도량형제도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2) 양제도의 개혁

광무 6년 도량형 개혁에서는 다음과 같이 量制度의 단위와 미터법의 단위 량을 정하였다.

① 양제도의 단위

1撮=10圭 1抄=10撮

19=10秒 1合=10匀

1升=10合 1斗=10升

^{1)《}增補文獻備考》 권 91, 樂考 2, 度量衡.

1石=10斗

② 미터법의 단위량

1先知翊突(cm)=5抄 5撮 4圭

1翊突(m)=5合 5勺 4抄 3撮 5圭

위와 같이 양제도를 제정함으로써 결국 1升=1803.90669㎡와 같은 표준량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 1승량은 일본이 明治 때 통일한 일본 도량형의 표준량을 취한 것이었다.

3) 형량의 개혁

미터법에서의 질량의 標準原器인 백금제 1kg의 400분의 15의 무게를 衡量의 표준으로 정하고 그것을 1량으로 하여 보조단위량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絲=10忽 1毫=10絲

1釐=10毫 1分=10釐

1錢=10分 1兩=10錢=37.5g

1斤=16兩=600g 1貫=100兩

이 표준량도 역시 일본 도량형의 표준량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전래의 도량형제도를 완전히 말살시킨 것이었다.

〈朴興秀〉

찾 아 보 기

[-]

가가상 假家商 126 가내수공업 家內手工業 256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 274 가룡(목) 加龍(木) 323, 332, 340 가목 駕木 332, 340 가정공물 加定貢物 429 가흥창 可興倉 525~528.532 각사무원공별무 各司無元貢別貿 146 각사 사주인 各司私主人 464.465 각사위전 各司位田 435 각사유원공별무 各司有元貢別貿 146 각사주인 各司主人 464 《각선도본》 《各船圖本》 340, 356 각염법 権鹽法 217, 361, 362 각읍채납제 各邑採納制 5,247,248, 250, 252 각전각계별무 各廛各契別貿 146 간경도감 刊經都監 240, 241, 298, 462 간망군 看望軍 539 간망인 看望人 539 간봉 間烽 541 간선도로 幹線道路 500,501 간전 墾田 116 간종(법) 間種(法) 95,104,105,117 감고 監考 539.540 감목관 監牧官 10, 556, 557 감무관 監務官 160 감야관 監治官 231, 245, 247 감직관 監織官 272 갑방 甲坊 256 갑선 甲船 347

갑수 甲首 483 갑인주안 甲寅柱案 64.78 갑조법 甲造法 347, 349, 352, 354 갑조선 甲浩船 347.350.352 강감 江監 530 강남농법 江南農法 2 강무방물 講武方物 467, 468 강민 사주인 江民私主人 465 강상 江商 536 강선 江船 337 강시 姜蓍 98 강창 江倉 463.530 강포 江布 260 강희맹 姜希孟 100, 265 강희안 姜希顔 100 개간전 開墾田 45.46 개간정책 開墾政策 114 개경환도 開京還都 495 개삭 改槊 348,349 개성부 開城府 32 개원통보 開元通寶 180 개천도감 開川都監 211, 213 개혁파사류 改革派士類 16,23,24, 27, 37, 62, 76 객주 客主 122, 163, 170, 171 갱정공법 更定貢法 갱정전시과 更定田柴科 41 거화법 擧火法 540 건경법 乾耕法 2, 101, 103, 117 건앙법 乾秧法 103 검교직 檢校職 41 104 견종법 畎種法 견직업 絹織業 253, 255, 257, 258, $266, 267, 275 \sim 277, 281$ 결 結 603,604

결부속파법 結負束把法 603,604, 계민수전의 원칙 計民授田의 原則 23 607, 624 계수관 界首官 214,315 결부제 結負制 25, 78, 94, 95, 113, 계장 罽匠 255 448, 451, 453 계전법 計田法 70,477,478 결전 結箭 406 계정・계전절충법 計丁・計田折衷法 격사복 兼司僕 552,555 8. 478 경사복청 兼司僕廳 555 계정법 計丁法 8.70.478 경 頃 604,609 계해약조 癸亥約條 202 경강상인 京江商人 536.538 고구려척 高句麗尺 601,602,606,608 경공장 京工匠 5, 6, 267, 295, 306 고려식 조선법 高麗式 浩船法 경관록 京官祿 432 고물비우 330 《경국대전》 《經國大典》 113,416, 《고사촬요》 《放事撮要》 592 $419, 420, 552 \sim 554, 557, 623$ 고삭망 藁索網 401 경무법(제) 頃畝法(制) 86,451,615, 고정주봉수대 古靜州烽燧臺 541 고지기 庫直 530 618, 619 경복궁 慶福宮 212 곡근전 穀根田 104 경비사 經費司 424 곡척 曲尺 624 경비식례 經費式例 430 《골정담옹일기》 《骨亭澹翁日記》 166 경비식횡간 經費式橫看 470 공 貢 457 경상 京商 276 공간 公王 374 경성무역소 鏡城貿易所 235 공계인 貢契人 163 경성수보도감 京城修補都監 211,212 공국당상 公局堂上 160 경성수축도감 京城修築都監 211 공납계 貢納契 146 경시서 京市署 3,122,123,141,149, 공납(제) 貢納(制) 91,438,460,472 425, 616 공랑상인 公廊商人 126 경연 經錠 552 공랑상점 公廊商店 122 경원무역소 慶源貿易所 235 공리 頁吏 321,460,463~465 경원창 慶原倉 527 공무 公貿 141.146.148 공무역 公貿易 290 경인세 經印稅 188 공물 貢物 7~9, 143, 284, 319, 321. 경인제도 經印制度 189,190 경작권 耕作權 61 $457 \sim 466, 468, 472, 509$ 경재소 京在所 321 공물공안 貢物貢案 141 경저리 京邸吏 460 공물수납관서 頁物收納官署 425 경저사 京邸舍 464 공물의 분정 貢物의 分定 457 경종법 耕種法 2 공물진성 貢物陳省 463 경주인 京主人 460 공법 貢法 7.83~89.442.446~449. 경차관(제도) 敬差官(制度) 83,87, $451 \sim 453, 456, 615, 618$ 215 공법상정소 貢法詳定所 446 경창 京倉 449, 525, 526, 530 공법전세제 頁法田稅制 83,84,88. 경쾌선 輕快船 536 89, 91

공부 貢賦 67.69.70.477 공철수취제도 貢鐵收取制度 248 공부상정도감 貢賦詳定都監 259. 공철의 대납제 貢鐵의 代納制 244 공해전 公廨田 19,442,443,446 317, 428 공부의 포납화 貢賦의 布納化 465 과록 科祿 432 공사 公事 158 과법 課法 362.363 공상 供上 437 과염법 課職法 362,363,380 공상세 工商稅 431 과전 科田 39.42.443.450 공선 空船 344 과전법 科田法 1.2.7.24.25.35~38. 공세곶창 頁稅串倉 525, 526, 528, 532 $40.41.43 \sim 46.48 \sim 50.52 \sim 54.59 \sim 61.$ 공수전 公須田 438, 440, 441, 510, 511 63, 64, 66, 68, 77, 78, 81, 82, $441 \sim 448$. 공신전 功臣田 13, 40, 49, 53, 58, 59, 523 442, 443 과전법체제 科田法體制 13,39,75,76 공안 貢案 7.9,428~431,465,468~ 과전절급액 科田折給額 40 470 과체진상 瓜遞進上 467 공역 公役 481 과하마 果下馬 590 공역서 供驛署 504 관 館 511 공역 貢鹽 367, 368, 371, 375 관곡 대여제도 官穀貸與制度 32 공염간 貢鹽干 362.459 관공장 官工匠 267, 269 공용조작식례 供用造作式例 429,430 관둔전 官屯田 438, 440, 441, 510 공원 公員 167 관무역 官貿易 4,196,199,200~202, 공음전 功陰田 53 205 공인 貢人 130 《관문등서책》 《關文謄書冊》 159 공작 工作 306 관비공물 官備貢物 6.8.320.459.465 공장 工匠 212, 214, 459 관비진상 官備進上 470 공장세 工匠稅 275 관상감 觀象監 425,426 공전 公田 1. 23. 28. 38. 53. 54. 58. 관선 官船 332, 336, 367, 372, 531 관선조운(제) 官船漕運(制) 524.53 443, 444 공전조 공수 公田租 公收 31 $0 \sim 532, 535, 536$ 공정고 供正庫 425,427 관선진 觀仙津 501 공제소 共濟所 167 관수관급제 官收官給制 1.69 공조 工造 306 관염 官鹽 362, 363, 367, 369, 374 공조 工曹 336, 426, 497 관염분 官鹽盆 366 공조서 供浩署 427 관영수공업 官營手工業 5,6 관영잠실 官營蠶室 264 공주인 貢主人 129 공지호 供紙戶 관영제지업 官營製紙業 296 294 공진회 共進會 167 관영진선 官營津船 333 공채 公債 472 관인구분전 官人口分田 20 관장제 官匠制 5 공천 公賤 363 공철감면 貢鐵減免 239, 251 관장제수공업 官匠制手工業 258. 공철량 貢鐵量 217, 230 267, 268, 275, 277, 290

관저전 官楮田 6,305,320,321 군부사 軍簿司 32 관전 館田 510 군산창 群山倉 529 군선 軍船 336, 341, 346, 349, 354, 관척 官尺 621 광나루 廣津 501 355 군선점검법 軍船點檢法 348 광업 鑛業 283 군수용 종이 軍需用紙 290 광업세 鑛業稅 431 광통교 廣涌橋 497 군역 軍役 34, 43, 91, 476, 480, 488 광흥(강)창 廣興(江)倉 33,336,424, 군역의 요역화 軍役의 徭役化 425, 435, 442, 443, 450, 530 군역전 軍役田 443 광흥창위전 廣興倉位田 435 군역제도 軍役制度 485 광희문 光熙門 497 군역호 軍役戶 71 교량 橋梁 407 군인전 軍人田 3,21,53 교린외교 交隣外交 203 군자감 軍資監 214, 369, 435 교린정책 交隣政策 199,200 군자강감 軍資江監 530 교서관 校書館 295, 306, 425, 426, 429 군자곡 軍資穀 473.474 교통기관 交通機關 9 군자시전 軍資寺田 39 9등연분제 九等年分制 91 군자위전 軍資位田 435 구리개 497 군자창 軍資倉 450 구분전 口分田 18~20, 39, 47, 218, 군적 軍籍 485,486 군전 軍田 18, 21, 33, 34, 43~45, 48, 440 구비제조법 廐肥製造法 107 53 구선 龜船 349,360 군중 軍中 140 구임관 久任官 306 궁궐수축도감 宮闕修築都監 212 구임제 久任制 306 궁궐조성도감 宮闕造成都監 212, 213 구황염 救荒鹽 369 궁내부 宮內府 267 구황청 救荒廳 432 궁사전 宮司田 39, 443 국가수조지 國家收租地 23.40 권감 權瑊 244 국가재정 國家財政 9,36,423,428, 권근 權折 64 432, 435, 437, 438, 476, 523 권맹손 權孟孫 365 국역 國役 7, 8, 480, 481 권작정책 勸蠶政策 258, 261, 263~ 국용전 國用田 435 267, 276 국용전제 國用田制 437 권중지 權仲知 124 군국아문 軍國衙門 157, 167 귀후서 歸厚署 251, 426, 429 군기감 軍器監 5.213~217.221.224. 균역법 均役法 369 230, 233, 235, 236, 297 균전론 均田論 75 군기시 軍器寺 268, 425, 426 균전제도 均田制度 27.28 근 斤 608.609 군기점고찰방 軍器點考察訪 215 군기타조공장 軍器打浩工匠 215 근경 根耕 117 근경법 根耕法 95,104 군두 群頭 10,556,564~566 군부 群副 556,564~566 금곡포창 金谷浦倉 525,526,532

금난전 禁亂廛 3, 126, 150, 151, 152 나장 羅匠 255 나지 蘿紙 315 라잔권 禁亂廛權 130 나지 蘿紙 315 나진만 대초도 羅津灣 大草島 397 금살도감 禁殺都監 577 낙천정장실 樂天亭蠶室 263 나전, 104, 108 단전 亂廛 150~152 전쟁 錦匠 255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 389 급수소선 汲水小船 324 남만 南蠻 203~206 급전사 給田司 424 남발 南撥 548 급전제 給田制 36 남시 南市 122 급주전 急走田 438, 510 남량반수 南向班首 159, 170 가구 驥廐 554 남군 청納貢文帖 241 가발 騎撥 10, 547 남분(제) 納分(制) 241, 462 기본 冀北 571 내거간 內居間 171 기사양전 己巳量田 25, 26, 33~35, 46, 53, 57, 66, 67, 78, 80, 454 내부시 內府寺 427 기선군 騎船軍 361 내본당 內佛堂 462 기전유제설 箕田遺制說 601 내심시 內贍寺 267, 269, 425~427 기전화 箕田尺 600, 601, 606, 608 내수사 內需司 425~427, 437, 537 길드 Guild 133, 150 내수소 內需所 427 길드클럽 Guild Club 134 내외물전 內外物廛 128, 129 길드 흘 Guild Hall 133 내외어물전 內外魚物廛 128, 129
당한 국 禁決
당한 국 禁決
[금양잡록》 《衿陽雜錄》 100, 101, 남하도 洛河渡 501
대 104, 108
유 등
답전사 給田司 424
답전사 給田司 424
답전제 給田制 36 남시 南市 122 159,170 기구 驥庭 554 남공문첩 納貢文帖 241 기발 騎撥 10,547 남분(제) 納分(制) 241,462 기북 冀北 571 내권 內居間 171 기사양전 □□量田 25,26,33~35, 내립마 內立馬 594 46,53,57,66,67,78,80,454 내부시 內府寺 427 기선군 騎船軍 361 내분당 內佛堂 462 기전 箕田 607 내사복시 內房寺 427 기전유제설 箕田遺制說 601 내섬시 內贍寺 267,269,425~427 기전화 箕田尺 600,601,606,608 내수사 內需司 425~427,437,537 길드 Guild 133,150 내수소 內需所 427 길드클립 Guild Club 134 내외물전 內外物廛 128,129
지구 驥鹿 554
지구 驥鹿 554
기발 騎撥 10,547 납분(利) 納分(制) 241,462 기북 翼北 571 내거간 內居間 171 기사양권 己巳量田 25,26,33~35, 내립마 內立馬 594 46,53,57,66,67,78,80,454 내부시 內府寺 427 기선군 騎船軍 361 내불당 內佛堂 462 기전 第田 607 내서복시 內司僕寺 552,554 기전유세설 箕田遺制説 601 내섬시 內贍寺 267,269,425~427 기전체 箕田尺 600,601,606,608 내수사 內需前 425~427,437,537 길드 Guild 133,150 내수소 內需所 427 길드클럽 Guild 134 내외물전 內外物廛 128,129
기사양전 □巳量田 25, 26, 33~35, 내림마 內立馬 594 427 대부시 內府寺 427 대부시 內所寺 427 대부시 內所寺 427 대부시 內所寺 465 기전 第田 607 대부시 內司僕寺 552, 554 대사부시 內則等 552, 554 대사부시 內則等 267, 269, 425~427 기전착 箕田尺 600, 601, 606, 608 대수사 內需司 425~427, 437, 537 길드 Guild 133, 150 대수소 內需所 427 김용, 129
기사양전 □巳量田 25, 26, 33~35, 내림마 內立馬 594 427 대부시 內府寺 427 대부시 內所寺 427 대부시 內所寺 427 대부시 內所寺 465 기전 第田 607 대부시 內司僕寺 552, 554 대사부시 內則等 552, 554 대사부시 內則等 267, 269, 425~427 기전착 箕田尺 600, 601, 606, 608 대수사 內需司 425~427, 437, 537 길드 Guild 133, 150 대수소 內需所 427 김용, 129
기선군 騎船軍 361 내불당 內佛堂 462 기전 箕田 607 내사복사 內司僕寺 552,554 기전유 개설 箕田遺制説 601 내섬사 內贍寺 267, 269, 425~427 기전착 箕田尺 600,601,606,608 내수사 內需司 425~427,437,537 길드 Guild 133,150 내수소 內需所 427 길드클립 Guild Club 134 내외물전 內外物廛 128,129
기전 (共和) (共和) (內司僕寺) 552,554 기전유제설 (箕田遺制説) 601 내섬시 內贈寺 267,269,425~427 기전체 (箕田尺) 600,601,606,608 내수사 內需司 425~427,437,537 길드 (Guild) 133,150 내수소 內需所 427 길드클럽 Guild (Club) 134 내외물전 內外物廛 128,129
기전유제설 箕田遺制説 601 내섬시 內贍寺 267, 269, 425~427 기전척 箕田尺 600, 601, 606, 608 내수사 內需司 425~427, 437, 537 길드 Guild 133, 150 내수소 內需所 427 길드클럽 Guild Club 134 내외물전 內外物廛 128, 129
길드 Guild133, 150내수소 內需所 427길드클럽 Guild Club134내외물전 內外物廛128, 129
길드 Guild133, 150내수소 內需所 427길드클럽 Guild Club134내외물전 內外物廛128, 129
길드클럽 Guild Club 134 내외물전 內外物廛 128,129
기드 호 Guild Hall 133 내외어문저 內外角物庫 199
린 - 글 Gund Han 100 메취 기원권 [17](宋代初座 120
길례서례 吉禮序禮 615 내의원 內醫院 426, 436, 468
길쌈대회 績麻大會 255 내이포 乃而浦 202 김덕령장군 출토복식 金德齡將軍 出土 내자시 內資寺 267, 271, 425, 427, 468
김덕령장군 출토복식 金德齡將軍 出土 내자시 內資寺 267, 271, 425, 427, 468
服飾 287 《노결대》 《老乞大》 257
김승경 金升卿 245,246 노동생산성(력) 勞動生産性(力) 93,
김시형 金時炯 273 96, 97, 103, 113, 117
김안국 金安國 100,266,528 노들나루 露梁津 501,502
김역지 金汝知 236 노사신 盧思愼 246.247
김이소 金履素 128 노숭 盧嵩 523
김일제 金一濟 307 노야장 盧冶匠 231
김재로 金在魯 152 녹과 祿科 441
김종서 金宗瑞 233,365 녹과전 祿科田 19
김함 출토복식 金涵 出土服飾 287 녹과전시 祿科田柴 18,20
김홍철 金弘喆 408 녹봉(제) 赫奉(制) 255, 432, 435, 530
1 A 1 - 2 N
《농가월령》 《農家月令》 101, 102,
《농가월령》 《農家月令》 101, 102, [ㄴ] 110, 111, 150~158 농본주의 農本主義 121, 149

《농사직설》 《農事直說》 2,98~105, $107 \sim 109.592$ 농상교서 農桑敎書 265, 266 《농상집요》 《農桑輯要》 98,99,102, 대로야 大爐冶 107, 110, 262, 278 농서 農書 98, 99, 106, 108, 117, 265 대마도 對馬島 201, 303 《농서집요》 《農書輯要》 100, 102, $104 \sim 110$ 농업생산기술 農業生産技術 117 농업생산력 農業生産力 92.93.98. $111.115 \sim 117.266.449$ 농우정책 農牛政策 115 《농정신편》 《農政新篇》 307 농촌수공업 農村手工業 260.267.291 농학 農學 117 누대의 농사 累代의 農舍 69 누르재 497 **누첨법** 累忝法 615 능급전 廩給田 39 능단장 綾段匠 269, 271, 272 능라장 綾羅匠 256, 267~272, 306 능장 綾匠 255 능침전 陵寢田 39,442,443

[⊏]

단 段 603,604 단선 單船 349 단자직조색 段子織浩色 270 단조법 單浩法 347.354 단조선 單浩船 347, 348, 351 달단마 韃靼馬 590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 82,83,445, $447 \sim 449$ 답험위관 踏驗委官 83 당대척 唐大尺 606,609,613,621 당전 唐錢 172 대남 代納 322,460 대납제 代納制 240, 243, 251, 252 대동법 大同法 9,129,130,322,339.

465, 466 대동수미 大同收米 129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566 237 대립가 代立價 489.490 대마도정벌 對馬島征伐 344 대맹선 大猛船 350, 352, 356 대방 大房 159,161 대복시 大僕寺 551 대선 大船 324, 341~343, 345, 350, 351, 353~355 대시 大市 124 대역 代役 291,533 대외무역 對外貿易 3.4.206.207 대일무역 對日貿易 288.289 대전 代田 70 《대전속록》 《大典續錄》 555 《대전통편》 《大典通編》 553,563 《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 563,578 대청무역 對淸貿易 198 대칭 對稱 609 대토지소유 大土地所有 2 대패예은 大牌禮銀 135 대행수 大行首 139,140 대화형선 大和型船 327 대후 大堠 499 덕성창 德成倉 525, 526, 528, 532 덕천고 德泉庫 427 덕흥창 德興倉 337, 525 도 渡 501 도가 都家 133, 134, 141 도가비량금 都家備量金 140 도가사례 都家事例 133 도관찰출척사 都觀察黜陟使 24, 37, 67 도량형 度量衡 10, 599 도련포 都連浦 571 도령위 都令位 139.140 도반수 都班首 159,160

도성수축도감 都城修築都監 211,212

도성조축도감 都城造築都監 211.212 리 里 609 도순문사 都巡問使 215, 218 도안색 都案色 553 도염서 都染署 255, 427 도원 都員 133, 135, 137, 140 《마경》 《馬經》 592 도자전 刀子廛 132 마랑이도 馬郞耳島 571 도절제사 都節制使 214, 215, 218, 539 마산창 馬山倉 524 도접장 都接長 157, 159, 160 마위전 馬位田 19, 510, 511 도중 都中 133~135.137~139 《마의서》 《馬醫書》 592 도청 都廳 462 마의전 馬醫田 592 도침장 擣砧匠 268, 269 마적 馬籍 572 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 215, 218, 552 마전 馬田 438 도화서 圖畵署 426 마정 馬政 10.549 도회 都會 223 마직업 麻織業 253, 255, 257, 259, 도회관 都會官 231 260, 281, 284 도회색 都會色 231 마패 馬牌 9.509 도회소 都會所 321, 471 《만기요람》 《萬機要覽》 128 돌산봉수대 突山烽燧臺 541 만상객주 灣商客主 170.171 동과수조법 同科收租法 611,613, 만호 萬戶 333 615, 618, 619 말장곡 末醬斛 611 《동국의례》 《東國儀禮》 615 망어법 網漁業 400.409 동률도량형 同律度量衡 616 매음도 煤音島 571 동위척 東魏尺 601 맥근전 麥根田 105 《동의보감》《東醫寶鑑》 389 맥분전법 麥糞田法 107 동이악 東夷樂 600 맹선 孟船 341,344,345 동자갑선 冬字甲船 346 맹선 猛船 $339.344.342.352 \sim 356.$ 동자개나루 銅雀津 501 358, 359 동장도회 銅場都會 224,229 먹 結 603,604 동장도회제 銅場都會制 224 면업 綿業 259, 260, 281~285, 289, 동장제 銅場制 224 291 동적이세 同積異稅 77.452 면조권 免租權 34,44 동전 銅錢 4,173,175~177,182~ 면조지 免租地 23, 45 $187, 191 \sim 194$ 면주전 綿紬廛 128, 129, 143, 147 동화원 桐華院 512 면포 綿布 279, 287, 290~292 득성창 得城倉 525.529 면포교역 綿布交易 288,289 등과전 登科田 28 면포기술 綿布技術 292 면포전 綿布廛 128, 129, 131 [2] 면포전 綿布田 283 면흑예은 面黑禮銀 135 명목화폐 名目貨幣 183, 189, 191, 192

량 兩 608,609

명일방물 名日方物 467,470 명전 明錢 173 모곡 耗穀 474~476 모미 耗米 46.474.476 모범 耗法 475 목감 牧監 558 목멱산봉수대 木覓山烽燧臺 541 목면 木棉 279.282 목면교역 木綿交易 288 목수적 木手籍 213 목자 牧子 10,556,557,561,563 목자위전 牧子位田 561 목장 牧場 510,571 《목장지도》 《牧場地圖》 565,567 무 畝 603,604,609 무경제 畝頃制 604 무군선 無軍船 341, 342, 344, 354 무명 木綿 287 무분각전 無分各廛 127,141 무비사 武備司 539,553 무선사 武選司 553 무역소 貿易所 4,200 무제염전 無堤鹽田 376.377 무제염전식 無堤鹽田式 6 문익점 文益漸 6,259,278,280~282, 286 물선진상 物膳進上 466, 468, 469 물품화폐 物品貨幣 182~185, 189, 190, 192, 194 미륵원 彌勒院 513 민간수공업 民間手工業 5.256~259. 267, 275, 277, 290, 291 민간야철수공업 民間冶鐵手工業 234 민간조선업 民間浩船業 332 민비공물 民備貢物 459 민비진상 民備進上 470 민영광산 民營鑛山 229 민영수공업 民營手工業 5,6 민유지 民有地 50,54

민전 民田 1,2

밀달조 密達和 102

[日]

박비증 朴非曾 312 박연 朴堧 622 박원형 朴元亨 312 박이창 朴以昌 365 《박택편》《泊字編》 278 박흥생 朴興生 100 박희손 朴喜孫 247 《반계수록》 《磻溪隨錄》 114,566,617 반대동 半大同 465 반수 班首 159.167.170 반정 半丁 22 발외 把犁 109 발장 撥將 547 발전자 發電器 573 방군수포 放軍收布 441, 442, 491 방남 防納 8,322,460,464,472 방납수 防納 461 방렴 防簾 407 방물 方物 141, 143, 144, 149, 470 방물진상 方物進上 467 방사량 房士良 282 방선 防船 360 《방약합편》 《方藥合編》 388 방전 防箭 406 방직업 紡織業 5,253,258,260 방직장 紡織匠 256, 267, 269 방패 防牌 482 방화전 房火錢 512 배고개 497 배다리 浮橋 503 백달원(토산) 白達元(兎山) 156, 158, 166 백만기씨 소장 문서 및 물품 白萬基氏 所藏 文書 및 物品 155 백목전 白木廛 128 백정대전 白丁代田 19.21

백제척 百濟尺 606 보상 褓商 154, 155, 157, 158, 162, 백첩포 白氎布 $279 \sim 281$ 164, 167 백추지 白硾紙 294 보상단 褓商團 167 번경 反耕 보상단의 운영 褓商團의 運營 162 104, 106, 111 번고 反庫 530 보상회 褓商會 160 번역법 燔鹽法 367 보수원 審樹院 512 범노선 帆櫓船 355 보인 保人 246, 483, 485, 488~490, 508 법성포 法聖浦 보인제 保人制 526 248 보초 寶鈔 173 법성(포)창 法聖(浦)倉 529.532 보포 保布 벽란도 碧瀾渡 501.502 8 벽진 이씨 출토복식 碧珍李氏 出土服 복색상정조건 服色詳定條件 286 飾 287 복흥고 福興庫 427 별공 別貢 8,320,429,430,458 본방 本房 159 별례진상 別例進上 469 봇짐장사 154 봉군 烽軍 539 별마 別馬 582, 586 봉상시 奉常寺 $425 \sim 427$ 별무도절전 別貿都折錢 147 봉수 烽隊 10 별사 別賜 255 봉수군 烽燧軍 540 별사방물 別使方物 143,145 봉수망 烽燧網 541 봉수제(도) 烽燧制(度) 79, 538, 540, 별선 別船 341, 342, 344 별선 別膳 467 547 봉입 捧入 147,148 별임령위 別任領位 139 별진선 別進膳 467 봉족 奉足 71, 483, 485, 487 병마도절제사 兵馬都節制使 214 봉족제 奉足制 8, 533 병마절도사 兵馬節度使 222,539 봉족호 奉足戶 483 병선 兵船 341~343.345 봉졸 烽卒 539 병작농 並作農 76 봉화간 烽火干 539 병작반수 영농 並作半收營農 68 봉화군 烽火軍 539 부 夫 603,604 병작반수제 並作半收制 75.76 병조 兵曹 497.554 부 負 604 부반수 副班首 병조선 兵漕船 6,335,350~356 159 병풍전 屛風廛 132 부산포 富山浦 202 보 步 603,604,609 부상 負商 154, 155, 157, 162, 164, 보무법 步畝法 603 $166 \sim 168, 170$ 부상단 중앙임원 負商團 中央任員 보발 步撥 10.547 보발군 步撥軍 547 169 보법 保法 8,484,485,488,489 부상청 負商廳 166 보부상 褓負商 122, 153, 154, 156, 부세 賦稅 431 부세법 賦稅法 163, 170 78 보부상객주 褓負商客主 170,171 부용창 芙蓉倉 337.529

부임 副任 159 부장전 副長田 438 북발 北綴 548 북포 北布 260 분 分 608,609 분급수조지 分給收租地 40.50.51. $53, 54, 59 \sim 61, 443$ 분등수세법 分等收稅法 235, 251 분수저법 糞收貯法 107 분전법 糞田法 107 분전제도 分田制度 17 분종법 糞種法 3.106 분지제 分地制 55 불수조특권 不輸租特權 62 불암창 佛巖倉 524.525 불용동전자 규찰조건 不用銅錢者 糾察 條件 181 비변사 備邊司 336 비우 鼻羽・飛荷・比牙・非雨 330, 331 빙고 氷庫 426

[人]

사간 私干 374 사간원 司諫院 552 4고 四庫 33 사고 私庫 464 사금장 絲金匠 268, 274 사농시 司農寺 427 사눌도 四訥島 571 사대교린관계 事大交隣關係 196 사대교린외교 事大交隣外交 196, $205 \sim 207$ 사대교린정책 事大交隣政策 195 사대동 私大同 465 사대외교 事大外交→사대교린외교 事 사전개혁론 私田改革論 70 大交隣外交 사도시 司菓寺 424~427

사민정책 徙民政策 114 사복시 司僕寺 10,425~427,551~ 554 사사전 寺社田 19.443 사선 私船 367, 372, 524, 536, 537 사선서 司瞻署 427 사설항로 私設航路 535,538 사섬서 司膳署 177~180,425,426 사설시 司瞻寺 298, 306 사소 絲所 256 사속 使屬 159 사수감 司水監 334, 335, 425, 531 사수색 司水色 $334 \sim 336,531$ 《사시찬요》 《四時篡要》 99 《사시찬요초》 《四時簒要抄》 160,265 사염 私鹽 364, 369, 374, 375, 379 사염간 私願干 362 사염분 私鹽盆 366 사염세 私鹽稅 362 사염업 私鹽業 375 사염의 관영화 私鹽의 官營化 368 사염인 私鹽人 375 사온서 司醞署 $425 \sim 429$ 사옹방 司饔房 427 사용원 司饔院 398, 426, 427, 459, 468 사원전 寺院田 39, 53 사자황 獅子黃 573 사장고 私藏庫 427.437 사장제 私匠制 5 사재감 司宰監 7,334,362,368,369, 410, 415, 417, 424~427, 459, 531 사전 私田 1, 20, 22~26, 29, 30, 33, 38, 44, 45, 53 \sim 56, 443, 444 사전개혁 私田改革 13.16~18.24. $26, 30, 33 \sim 35, 54, 64$ 사전개혁론자 私田改革論者 15 사전개혁안 私田改革案 18,19,23 사무역 私貿易 196~202, 205, 206, 사전경기의 원칙 私田京畿의 原則

290, 299

사건복구론자 私田制度 28 상등전 上等田 611 상고국 高理局 157, 167 사건조 장구 私田租 27 상리국 高理局 157, 167 사건조 장수 私田租 2收 31, 32, 62 상리국절목 高理局節目 169 사건조 반수 私田租 2收 27 상립원 上林園 301, 427 사건혁과 私田華龍 31, 32, 36, 62, 66 사주인 私主人 464 상무사 우사 高務社右社 153, 156, 나직금지 私織禁止 277 사건선 私津船 333 상무사장경 高務社章程 154 사장 社倉 436 상무사 작사 高務社左社 167 사건형 자倉 473, 474 상민회 高民會 167 사건형 사건 한민화 高校 221, 222 상사사 尚瑞司 219 사숙서 司畜署 426, 427 상계원 尚瑞院 9 사거리로 著侈禁令 259 상아주최 象牙周尺 616 사명도 沙平渡 501 상의국 尚太局 255, 267 사괴부 司平府 423 상위사 尚太司 267 사과시 司圃署 424~427, 468 상의국 尚太局 267 사고시 司圃署 424~427, 468 상의 尚太院 267~275, 306, 425~4 원리 메田 87, 453 상대자 上任者 162 상대자 上任者 162 상대자부 麻油津 501 상명장 常平倉 29~32, 430 상명자 三道都體察使 336 상명자 上任者 162 상명자 三道都體察使 336 사건 사건부 西江津 501 서로 三道都體察使 336 사건부른 三田渡 501, 502 사건부른 西江津 501 서로 三道 後親 356, 536 서리 西市 122 상징부 管排機法 99, 105 서구 徐有榘 307	36, 37, 46	161
사전제도 私田制度 28 상등전 上等田 611 사건조 秋田租 27		
사건조 形田租 27 사건조 공수 私田租 公收 31, 32, 62 사건조 만수 私田租 华收 27 사건혁과 私田華麗 31, 32, 36, 62, 66 사주인 私主人 464 사직금지 私總禁止 277 사건선 私津船 333 사장 社倉 436 사장 社倉 473, 474 사천왕사 四天王寺 605 사취관 沙鐵鑛山 232, 233 사천위권 연 沙鐵號山 232, 233 사천위권 연 沙鐵號山 232, 233 사천위권 이 濟醫 426, 427 사치금링 奢侈禁令 259 사제금 기惠府 423 사로시 司顧署 424-427, 468 사전보 히圃曆 19, 463 사로시 司國所 19, 463 사로시 리國所 432 사전권		
사건조 광수 私田租 公收 31, 32, 62 상리국절목 商理局節目 169 사건조 반수 私田租 半收 27 사건혁과 私田革罷 31, 32, 36, 62, 66 사주인 私主人 464 사괴금지 私織禁止 277 사건선 私津船 333 사장 社會 436 사장 社會 473, 474 사진형과 (四天王寺 605 사결광산 沙鐵鑛山 232, 233 사실취면역 沙鐵吹鍊役 221, 222 사축서 司畜署 426, 427 사괴금링 奢侈禁令 259 사명도 沙平渡 501 사명부 司應府 423 사명부 司應府 423 사면부 司應府 423 사면부 可應府 423 사업사 (비재) 306 사명도 행박月俸 306 사명도 행박育森 43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산건 山田 87, 453 살과법 撒插法 104 산개나루 麻浦津 501 삼도정차관 三道敬差官 335 삼도도제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상명사 三面 423 상명사 (비재) 307 상점 (비재) 407 상명보 (비田 87, 453 상명보 (비田 613 상명보 (비田 613 (비田		
사전호 반수 私田租 半收 27 사전혁파 私田華龍 31, 32, 36, 62, 66 사주인 私主人 464 사주인 私主人 464 사주인 私主人 464 사주는지 私織禁止 277 사진선 私津船 333		
사진학과 私田革罷 31, 32, 36, 62, 66 사주인 私主人 464 사주인 私主人 464 사직금지 私織禁止 277 사진선 私津船 333 사장 社倉 436 사장 私倉 473, 474 사진왕사 四天王寺 605 사철광산 沙鐵鑛山 232, 233 사찰취건 현 沙鐵吹鍊役 221, 222 사축서 司畜署 426, 427 사지금령 奢侈禁令 259 사제금령 奢侈禁令 259 사제금령 奢侈禁令 259 사제금령 奢侈禁令 259 사제로 한平渡 501 사제로 한平渡 501 사제로 한平渡 501 사회사 비族司 267 사전시 前屬司 219 사장시 리黃門 423 사장시 리國署 424~427, 468 사한부 司應府 19, 463 사로서 司團署 424~427, 468 사한부 司應府 19, 463 사로서 리國署 428 사한부 司應府 19, 463 사로시 리國署 428 사한부 司應府 19, 463 사로시 리國署 428 사한부 司應府 19, 463 사로시 리國署 429 사로시 리國署 429 사로시 리國署 429 사로시 리國署 420 사로시 기료를 휴대를 19, 463 사람보 기료를 수 163 사람보 기관 上任事客主 163 사람 보다는 613 사람 함께를 149, 175, 182, 189, 193, 194 생선간 生鮮干 459 생활 生餓 233 사람 보해 233 사람 보해 233 사람 보해 조점8 사람 보충 475 사람 교ຸ縣 476 사람 西藤 548 사람 그 548 사		
사주인 私主人 464 상무사 우사 商務社右社 153, 156, 사직금지 私織禁止 277 사진선 私津船 333 상무사장정 商務社章程 154 사장 私倉 473, 474 상민회 商民會 167 사천왕사 四天王寺 605 사철광산 沙鐵鑛山 232, 233 상방사 尚方司 267 사천왕사 四天王寺 605 사천왕사 尚方司 267 사천사 尚瑞司 219 상수시원 尚瑞院 9 상아주최 象牙周尺 616 상의국 尚太局 255, 267 사회부 司严府 423 사학원 司憲府 19, 463 사장시 司嗣署 424~427, 468 사한부 司憲府 19, 463 삼각자 10日 163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산전 山田 87, 453 상과법 撒播法 104 삼개나루 麻浦津 501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상례형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삼사 三司 423 36-21 3升耗法 475 사천 西豫 548 사병고나무 西兆庫津 501 서모 原耗 476 32-32-31 사건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사직금지 私織禁止 277 158,160,163,164,167 사진선 私津船 333		
사진선 私津船 333		
사창 私倉 436 상무사 화사 商務社左社 167 사창 私倉 473, 474 상민회 商民會 167 사천왕사 四天王寺 605 상방 尚方 273 사철광산 沙鐵鑛山 232, 233 상방사 尚方司 267 사철취련역 沙鐵吹鍊役 221, 222 상서사 尚瑞司 219 사축서 司畜署 426, 427 상서원 尚瑞院 9 사치급령 奢侈禁令 259 상아주최 象牙周尺 616 사평도 沙平渡 501 상의국 尚衣局 255, 267 사평부 司平府 423 상의사 尚太司 267 사포서 司圃署 424~427, 468 상의원 尚太院 267~275, 306, 425~4원부 司憲府 19, 463 사포서 司圃署 424~427, 468 상의원 尚太院 267~275, 306, 425~4원부 司憲府 19, 463 사로서 司圃署 424~427, 468 상의원 尚太院 267~275, 306, 425~4원보 행料月俸 306 사망진상 朔望進上 466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과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상전최 上田尺 613 산전 山田 87, 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 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 430 상당경하게 三道敬差官 335 상당론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波 501, 502 서장나루 西江津 501 서와나루 西江津 501 서와나루 西北津 501 서로 鼠耗 476 서발 西撥 548 서병고나루 西水庫津 501 3도왜란 三浦倭亂 356, 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사창 私倉 473, 474 사천왕사 四天王寺 605 사철광산 沙鐵鑛山 232, 233 사철취련역 沙鐵吹鍊役 221, 222 사축서 司畜署 426, 427 사치금령 著侈禁令 259 사회금령 著侈禁令 259 사정부 리平府 423 사포서 司圃署 424~427, 468 사한부 司憲府 19, 463 사로서 司圃署 424~427, 468 사한부 司憲府 19, 463 사로서 司圃署 432 산관록 散官祿 43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산전 山田 87, 453 살과법 撒播法 104 삼개나루 麻浦津 501 삼도경차관 三道敬禮官 335 상명통보 常平鐘 436 상명본 第平章 436 상명사 三道都體察使 336 상명통보 常平通寶 149, 175, 182, 189, 193, 194 상선간 生鮮干 459 생철 生鐵 233 사랑나루 西江津 501 서로 鼠耗 476 사람보 西接 548 사병고나루 西水庫津 501 서로 鼠耗 476 사람보 西接 548 사병고나루 西水庫津 501 서로 鼠耗 476 사람보 西接 548 사병고나루 西水庫津 501 성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사천왕사 四天王寺 605 상방 尚方 273 사철광산 沙鐵鑛山 232, 233 상방사 尚方司 267 사철취런역 沙鐵吹鍊役 221, 222 상서사 尚瑞司 219 사축서 司畜署 426, 427 상서원 尚瑞院 9 사치금령 奢侈禁令 259 상아주척 象牙周尺 616 사평도 沙平渡 501 상의국 尚衣局 255, 267 사평부 司平府 423 상의사 尚表司 267 사포서 司圃署 424~427, 468 상의원 尚衣院 267~275, 306, 425~ 사한부 司憲府 19, 463 427 사료월봉 朔科月俸 306 상임 上任 160 삭망진상 朔望進上 466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상전척 上田尺 613 산전 山田 87, 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 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상대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 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 175, 182, 삼도로제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서장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3승모법 3升耗法 475 서발 西接 548 사병고나루 西水庫津 501 경포액란 三浦倭亂 356, 536 서빙고나루 西水庫津 501 청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사철취련역 沙鐵吹鍊役 221, 222 상서사 尚瑞司 219 사축서 司畜署 426, 427 상서원 尚瑞院 9 사치금령 奢侈禁令 259 상아주척 象牙周尺 616 사평도 沙平渡 501 상의국 尚衣局 255, 267 사평부 司平府 423 상의사 尚衣司 267 사포서 司圃署 424~427, 468 상의원 尚衣院 267~275, 306, 425~ 사한부 司憲府 19, 463 427 삭료월봉 朔料月俸 306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상전 上田尺 613 산전 山田 87, 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 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본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 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 175, 182, 삼도도제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서사 三司 423 3승모법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사형구 三陟府 623 3포왜란 三浦倭亂 356, 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사철취련역 沙鐵吹鍊役 221, 222 상서사 尚瑞司 219 사축서 司畜署 426, 427 상서원 尚瑞院 9 사치금령 奢侈禁令 259 상아주척 象牙周尺 616 사평도 沙平渡 501 상의국 尚衣局 255, 267 사평부 司平府 423 상의사 尚衣司 267 사포서 司圃署 424~427, 468 상의원 尚衣院 267~275, 306, 425~ 사한부 司憲府 19, 463 427 삭료월봉 朔料月俸 306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상전 上田尺 613 산전 山田 87, 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 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본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 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 175, 182, 삼도도제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서사 三司 423 3승모법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사형구 三陟府 623 3포왜란 三浦倭亂 356, 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가신하가 四人工寸 000 지원과사 沖滯鏈山 999 999	
사축서 司畜署 426, 427 상서원 尚瑞院 9 사치금령 奢侈禁令 259 상아주척 象牙周尺 616 사평도 沙平渡 501 상의국 尚衣局 255, 267 사평부 司平府 423 상의원 尚衣院 267~275, 306, 425~ 사한부 司憲府 19, 463 427 사료원봉 朔料月俸 306 상임 上任 160 사망진상 朔望進上 466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상전척 上田尺 613 산전 山田 87, 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 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 430 삼도경차관 三道敬養官 335 상정·명보 常平通寶 149, 175, 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189, 193, 194 상천간 生鮮干 459 상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서모 鼠耗 476 서의 그나루 西珠庫津 501 서모 鼠耗 476 서의 西務 548 서빙고나무 西米庫津 501 서의 西務 548 서빙고나무 西米庫津 501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사서사 告控司 210
사치금령 奢侈禁令 259 상아주최 象牙周尺 616 사평도 沙平渡 501 상의국 尚表局 255, 267 사평부 司平府 423 상의원 尚衣院 267~275, 306, 425~ 사현부 司憲府 19, 463 427 삭료원봉 朔科月俸 306 상임 上任 160 삭망진상 朔望進上 466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산전 山田 87, 453 상징공법 詳定貢法 85, 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본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 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 175, 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삼사 三司 423 서강나루 西江津 501 서모 鼠耗 476 서字 교ຸ縣 476 서명 西渡 548 서병고나루 西冰庫津 501 서의고나루 西冰庫津 501 서의고나루 西冰庫津 501 서의고나루 西水庫津 501 서의고나루 西水庫津 501 서의고나루 西水庫津 501 서의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8시시 同補的 219 사서의 告禮陸 0
사평보 沙平渡 501 상의국 尚表局 255, 267 사평부 司平府 423 상의사 尚表司 267 사포서 司圃署 424~427, 468 상의원 尚太院 267~275, 306, 425~ 사현부 司憲府 19, 463 427 사료월봉 朔料月俸 306 상임 上任 160 삭망진상 朔望進上 466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상전척 上田尺 613 산전 山田 87, 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 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補津 501 성평창 常平倉 29~32, 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 175, 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보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洙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 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사평부 司平府 423 상의사 尚衣司 267 사포서 司圃署 424~427,468 상의원 尚衣院 267~275,306,425~ 사현부 司憲府 19,463 427 삭료월봉 朔料月俸 306 상임 上任 160 삭망진상 朔望進上 466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상전척 上田尺 613 산전 山田 87,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175,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189,193,194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우구 廣末建 501 3로모법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사헌부 司憲府 19,463 427	사펴부 司巫府 423	상의사 治表司 267
사헌부 司憲府 19,463 427	사포서 司圃罗 424~427 468	사이와 冶志院 267~275 306 425~
사료원봉 朔科月俸 306 상임 上任 160 삭망진상 朔望進上 466 상임사 객주 上任事名主 163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상전척 上田尺 613 산전 山田 87,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175,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189,193,194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우구 廣天建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로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빙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서유구 徐有集 307	사허부 司憲府 19.463	
삼망진상 朔望進上 466 상임사 객주 上任事客主 163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상전척 上田尺 613 산전 山田 87,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175,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189,193,194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우구 處耗 476 3 중모법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산관록 散官祿 432 상임자 上任者 162 《산림경제》《山林經濟》 307 상전척 上田尺 613 산전 山田 87,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175,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189,193,194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가 三司 423 서모 鼠耗 476 서보 三時府 623 서빙고나루 西冰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서유구 徐有榘 307		
《산림경제》 《山林經濟》 307 산전 山田 87,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상평보 常平寶 436 상평보 常平寶 436 상평창 常平倉 29~32,430 상당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175,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상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502 삼사 三司 423 3승모법 3升耗法 475 서말 西擬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입고나루 西冰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산전 山田 87, 453 상정공법 詳定貢法 85, 86 살과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황 常平倉 29~32, 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 175, 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189, 193, 194 상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오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오나루 西抵津 501 3등모법 3升耗法 475 서말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冰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 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서유구 徐有集 307		상전척 上田尺 613
살파법 撒播法 104 상평보 常平寶 436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 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 175, 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189, 193, 194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모 鼠耗 476 3승모법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 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서유구 徐有榘 307	산전 山田 87.453	
삼개나루 麻浦津 501 상평창 常平倉 29~32, 430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 175, 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189, 193, 194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모 鼠耗 476 3승모범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 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서유구 徐有榘 307		
삼도경차관 三道敬差官 335 상평통보 常平通寶 149,175,182,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189,193,194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망 교縣 476 3승모범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서유구 徐有榘 307		
삼도도체찰사 三道都體察使 336 189, 193, 194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 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망 교耗 476 3승모법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 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서유구 徐有榘 307		
3등전품제 三等田品制 447 생선간 生鮮干 459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모 鼠耗 476 3승모범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서유구 徐有榘 307		
삼례역 參禮驛 508 생철 生鐵 233 삼발나루 三田渡 501,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삼사 三司 423 서모 鼠耗 476 3승모법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서유구 徐有榘 307		
삼사 三司 423 서모 鼠耗 476 3승모범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서유구 徐有榘 307	삼례역 參禮驛 508	
삼사 三司 423 서모 鼠耗 476 3승모범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서유구 徐有榘 307	삼밭나루 三田渡 501,502	서강나루 西江津 501
3승모법 3升耗法 475 서발 西撥 548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서유구 徐有榘 307	삼사 三司 423	서모 鼠耗 476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서유구 徐有榘 307	3승모법 3升耗法 475	
상경농법 常耕農法 99, 105 서유구 徐有榘 307	삼척부 三陟府 623	서빙고나루 西氷庫津 501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서유구 徐有榘 307	3포왜란 三浦倭亂 356,536	서시 西市 122
가게 쓸供며 OF 가드의 구도스 907 FOF	상경농법 常耕農法 99,105	
상성선 帛耕田 95 역구상 石賏君 331,525	상경전 常耕田 95	석두창 石頭倉 337,525
상고계 시행사목 商賈稧 施行事目 석방림 石防簾 409	상고계 시행사목 商賈穆 施行事目	석방렴 石防簾 409

석철광산 石鐵鑛山 232, 233 세폐색 歲幣色 142 소격서 昭格署 3,425.426 선 船 341 선가 船價 372,450 소경공부 所耕貢賦 477 선공감 繕工監 5,212,214,217,221, 소경요역 所耕徭役 477 224, 230, 233, 235, 426, 427 소경전 所耕田 38.67.70 선군 船軍 351, 363, 374, 420 소경전세 所耕田稅 477 선망 旋網 409 소금전매제 鹽專賣制 363, 365, 371. 선미재 船尾材 331 379 선부서 船府署 소농민경영 小農民經營 61,69,73, 334 선상노 選上奴 306 83. 91 소농민의 자경지 자영형 小農民의 自 선상업 船商業 536 선상활동 船商活動 538 耕地 自營型 76 소농민의 차지 병작형 小農民의 借地 선세 船稅 431 선수재 船首材 330 並作型 76 소로야 小爐冶 237 선잠제 先蠶祭 261.262 선전 線(結)廛 131 소맹선 小猛船 6.350.352~355 선제 船制 360 소목군 燒木軍 459 소양강창 昭陽江倉 525,526,532 선제개혁 船制改革 347,350 선혜청 宣惠廳 143, 336, 339 소칭 小稱 609 소패예은 小牌禮銀 135 섬 石 607,608 소후 小堠 499 성문도감 城門都監 212 성석린 成石璘 524 《속대전》 《續大典》 555, 563 《성소복부고》 《煋所覆瓿藁》 388 속전 續田 87, 447, 448 성장 筬匠 268.269 손실답험법 損實踏驗法 7,442,443 세 稅 443 솔인 率人 508 세견선 歲遣船 202, 204 솔정 率丁 483 세곡운송 稅穀運送 536 송전 宋錢 172 세곡운송정책 稅穀運送政策 524 송질 宋軼 272 수 銖 608 세곡의 조운 稅穀의 漕運 528 세납의 화폐화 稅納의 貨幣化 184 수경가 輸京價 449 세사미 歲賜米 202 수군절도사 水軍節度使 222,539 세업전 世業田 14 수납대가 輸納代價 450 세역화전 歲易火田 456 수등이척제 隨等異尺制 66,78,80, 세위전 稅位田 440 89, 113, 452 수등이척주척 隨等異尺周尺 7,447, 세종수표 世宗水標 617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 451 수등이척지척 隨等異尺指尺 7.447. 志》 455, 565, 566 세종영조척 世宗營造尺 617,621 451 세종주척 世宗周尺 617 수량 水梁 396, 407, 408, 417 세폐 歲幣 141, 142, 149 수량선주 水梁船主 417

수령 守令 539	숭례문 崇禮門 497
수립주척 水立周尺 617	승여사 乘輿司 504, 553
수산업 水産業 7,382	승정원 承政院 552
수산자업 水産資業 392	시비법 施肥法 2,106~108,117
수상 水商 176	시역 市役 129
수성전선색 修城典船色 334,335	시전 市廛 3,58,122~124,266
수손급손(제) 隨損給損(制) 182,	시전 市典 122
444	시전행랑도감 市廛行廊都監 213
수쇄법 手灑法 6	시패 市牌 152
수신전 守信田 46, 47, 51	시행수 時行首 140
수영 水營 336	식년마 式年馬 582
수운 水運 10,523,530	식염절가제 食鹽折價制 371
수자 繡匠 255	신개 申槩 363~365
수전 水田 87, 115, 457	신공제 申公濟 537
수전농법 水田農法 101~103, 106,	신도궁궐 新都宮闕 495
117	신도궁궐조성도감 新都宮闕造成都監
수전농업 水田農業 2,112,116	211, 212
수전종맥법 水田種麥法 95	신득재 申得財 312, 313
수조권 收租權 34, 36, 37, 45, 50, 52,	
54, 60~62, 65, 66, 82, 444	신묘대전 辛卯大典 251
수조권자 收租權者 51	신미도 身彌島 571
수조권적 토지지배 收租權的 土地支配	
28, 40, 43, 50, 59, 60	신분제적 토지지배관계 身分制的 土地
수조율 收租率 58, 79, 451	支配關係 54
수조제 收租制 77,78,80,83,91	신숙주 申叔舟 335, 351, 354, 476
수조지 收租地 23,30,36,48,49,53,	
58	488
수조지 분급제도 收租地分給制度 49	
수참 水站 523	《신편집성마의방》 《新編集成馬醫方》
수참판관 水站判官 530	100
수철 水鐵 233	신표 信標 160, 162
수철장 水鐵場 225	신혜원 新惠院 512
수철장 水鐵匠 236, 237, 240, 251, 252	실감반수 實監班首 159,170
수태지 제조법 水苔紙製造法 311	실임 實任 139
个	심정 沈貞 537
숙철 熟鐵 233	심회 沈澮 246, 247
수 전 주변 (주변 (전 (주면	1/10수조율 十分之一收租率 7,79
순제악 舜帝樂 600	1/10不至
순제적 舜帝尺 600	10至(實) 有一種(率) 50,00
군세적 <i>舜</i> 市八 600 순찰사 巡察使 539	10과 (産 140 10지척 十指尺 606
元 包 / 『	10小骨 118人 1000

어구 漁具 402

어구어법 漁具漁法 400

어량선세 魚梁船稅 415

어량 漁(魚)梁 396, 402~407, 417

어량어업 魚梁漁業 402,409,420 [0] 어량전주 魚梁箭主 417 어세 漁稅 432 아동 兒童 137.138 어수량 漁水梁 396 아록전 衙祿田 438, 440, 441 어염세 漁鹽稅 431 아기역 安客驛 508 어장(제도) 漁場(制度) 417.431 《안기집》 《安驥集》 592 어전(어업) 漁箭(漁業) 384,407,408. 아동포 安東布 260 417, 419, 420 아렴사 按廉使 24, 64, 361 〈어초기〉 〈漁樵記〉 안목 安牧 63 언전 堰田 457 안순 安純 85.420 《언해잠서》 《諺解蠶書》 264.266 안심동당 安心東堂 290 여각 旅閣 122,170,171 안원 安瑗 63 여둔봉수대 餘屯烽燧臺 541 안철손 安哲孫 532 《여지도서》 《輿地圖書》 565 안흥창 安興倉 역 驛 476, 480, 510, 512, 547 337 애마자장관제령 愛馬藝長官提領 558 역로행정 驛路行政 503 액정국 掖庭局 255 역리 驛吏 508.510 야철수공업 冶鐵手工業 211.216. 역마 驛馬 509 역승 驛丞 504.508 236, 240 약재진상 藥材進上 468,469 《역어유해》 《譯語類解》 388 약전 藥廛 132 《역어유해보》 《譯語類解補》 408 양마소 養馬所 554 역원 驛院 511 양맥근전 兩麥根田 105 역장 驛長 508 양성지 梁誠之 284.476 역전 驛田 503,510,511 양어 養魚 410 역정 驛丁 508 양잠 養蠶 261.263.264 역제 驛制 503,511 《양잠경험집요》《養蠶經驗輯要》 역졸 驛卒 508.511 262 역축 力畜 108 양잠방 養蠶方 99.262 역호 驛戶 504 양전 量田 77~90, 113, 451, 454 연례방물 年例方物 143,144 양전제(법) 量田制(法) 79~81,83, 연분 9등법 年分九等法 447,448 91, 447 연분제 年分制 86 양전척 量田尺 86,451,455 연안어장 沿岸漁場 413 양현고 養腎庫 424~426,468 연작법 連作法 499 연작상경농법 連作常耕農法 79 양화나루 楊花渡 501.502 《양화소록》 《養花小錄》 100 연호미법 煙戶米法 473

역환마 易換馬 583

역가 鹽價 364.367

역환마가 易換馬價 588

역간 鹽干 367, 372, 374, 379, 380

257

영군 職軍 364	♀ 〜
염군 鹽軍 364 염법 鹽法 364~367,371	오승 吳陞 222 오장 伍長 539,540
역부 鹽夫 374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
역분 鹽盆 362, 374, 375	稿》 388
역산지 鹽産地 373, 374	와서 瓦署 42, 429
염세 鹽稅 363, 375, 432	온도선 莞島船 324, 329
역소 鹽所 364,374	왕강 王康 523
역업 鹽業 283, 380	왕망척 王莽尺 605
염업정책 鹽業政策 363, 374, 380	
염업제도 鹽業制度 361, 365, 368,	
369, 371, 379	왕실재정 王室財政 423, 428, 437,
염역 鹽役 372, 374, 375	438
역장 鹽場 367	왕토사상 王土思想 59
염장 染匠 270,272	왜관 倭館 202
염(장)관 鹽(場)官 361, 369, 375	왜별선 倭別船 344, 345
염적 鹽籍 375	외거간 外居間 171
염전 鹽田 376, 377	외고 外庫 464
염전식 제염법 鹽田式製鹽法 376,	외립마 外立馬 594
378	외역전 外役田 443
염정 鹽井 376~378	요역 徭役 67,69,441,476~480
염정 鹽丁 374	요원 僚員 160
염제 鹽制 371	요중 僚中 161, 162, 169
역창 鹽倉 362, 369, 372	용구 龍廐 554
염철법 斂鐵法 216, 220, 221, 245, 248	용등자 龍騰紫 573
염포 鹽浦 202	용산성 龍山城 525
역한 鹽漢 364, 374	《용재총화》 《傭齋叢話》 264
염한호 鹽漢戶 363	《우경》 《牛經》 592
염호 鹽戶 374,380	우사 右社→상무사 우사 商務社右社
영덕 철장도회 盈德鐵場都會 229	우암봉수대 牛巖烽燧臺 541
영산성 榮山城 525, 526	우희열 禹希烈 410
영산창 禁山倉 529 532	운곡선 運穀船 340
영조척 營造尺 606, 615, 621	운구 雲廐 554
예빈시 禮賓寺 425~427	원 院 511~513
5가 五價 450	원공 元貢 141,146
5강진로 五江津路 501	원관 院館 523
5거법 五炬法 540	원정공물 元定頁物 429
5고7궁 五庫七宮 427	원주전 院主田 438, 512
5도 도반수 五道都班首 166	월과군기(법) 月課軍器(法) 214
5등호제 五等戶制 458	월과장인 月課匠人 240
오리정 五里亭 499	월과제 月課制 218, 219, 221, 223,

233 의염(법) 義鹽(法) 362, 365, 367, 371, 월령 月令 215, 222, 223, 237, 468, 469 380 의염색 義鹽色 365~368, 370, 371, 월선 月膳 466 위봉족 緯奉足 268 380 유子 琉球 203~206 의영고 義盈庫 426.427 유벽번전려 有辭反轉型 109.110 의창 義倉 365.366.368.436.472.474 유분각전 有分各廛 126, 128, 130, 이계전 李季甸 367, 370, 378, 379 이군색 二軍色 141, 143, 144, 146, 151 553 유비창 有備倉 415 이궁조성도감 離宮浩成都監 211.212 유사눌 柳思訥 179 이권재상론 利權在上論 175 유엽전 柳葉錢 191 이극배 李克培 247 유제염전 有堤鹽田 377 이덕량 李德良 245 유척기 兪拓基 623 이덕형 李德馨 547 유후사 留後司 181 이마 理馬 593 유흥동곡척 劉歆銅斛尺 616 2모작 二毛作 80 이물비우 330.331 육염 陸鹽 372 육운론 陸運論 527 이민도 李敏道 177 육의전 六矣廛 121, 122, 126, 129~ 이보범 里步法 609 132, 134, 137, 139, 141, 144, $147 \sim 152$, 이사흠 李士欽 262 이색 李穡 64 155 육장전 六長廛 130 이선제 李先齊 368, 378 《육전조례》 《六典條例》 618,623 이수광 李睟光 279 6圣 六曹 552 이암 李嵒 98 육주부전 六主夫廛 130 이앙법 移秧法 101, 103, 108, 117 육주비전 六注比廛 130 이우 李偶 100 육지측량부 陸地測量部 624 이이 李珥 476 유목 尹睦 126 이적 李洂 262 윤소훈 尹昭訓 417 이적동세 異積同稅 78.80 유작법 輪作法 449 이정주척기 釐正周尺記 617 윤필상 尹弼商 247 이태원 梨泰院 512 윤호 尹壕 246,247 인구 麟廐 554 윤효손 尹孝孫 246~248 인납 引納 429,430 《율려신서》 《律呂新書》 623 인록 人祿 483 은병 銀瓶 172.173 인리위전 人吏位田 440 은화 銀貨 175.186 인문장 引紋匠 268, 270, 272 을유양전 乙酉量田 454 인신척 人身尺 605,608 응방진상 鷹坊淮上 469 일과제 日課制 233 일본산 닥나무 倭楮 응봉봉수대 應峰烽燧臺 541 303.304 응상백 凝霜白 573 일수 日守 508 응인 鷹人 471 일시 日市 122

일차물선 日次物膳 467 1할모법 一割耗法 475,476 임선론 賃船論 527 임선제 賃船制 537 임업세 林業稅 431 입정 林整 531 임진나루 臨津渡 501,502 《임홍청금록》 《林鴻靑衿錄》 168,169 입역장인 入役匠人 275 입전 立廛 133, 134, 147 입전도중 立廛都中 138 〈입전조례〉 〈立廛條例〉 141

[ㅈ]

자정제 字丁制 22 작무법 作畝法 105.117 작서모 雀鼠耗 474 작정 作丁 19,21,22 잔잔호 殘殘戶 73.74 작무역 潛貿易 176, 198, 202, 205, 206 전오제염 煎熬製鹽 376, 378 《잠서》 《蠶書》 261 잠실도회 蠶室都會 5.261~267 잡역 雜役 459.477 잡직서 雜織署 255 잡직체아록 雜織遞兒祿 432 장세 匠稅 5,235,237,251 장시 場市 3, 124, 259, 266, 276 장악위 掌樂院 426 장원서 掌苑署 425, 426, 468 장전 長田 458,510 장흥고 長興庫 337, 426, 427 재금장 裁匠 268.274 재상전 災傷田 87,90,447,448 재역전 방식 再易田方式 95 저산 8읍 苧産八邑 153, 155, 158, 159, 162, 164, 167 《저죽전사실》 《楮竹田事實》 302 저포전 苧布廛 128, 129, 143. 147 저향 楮鄕 309

저화 楮貨 4,173~177,182~187, 291~294, 298, 304, 369, 370, 460 전객 佃客 57,59~61,67,450 전결제 田結制 7, 447, 450 전교서 典校署 298 전구서 典廐署 427 전농시 典農寺 410, 425, 468 전리사 典理司 32 전민계정사 田民計定使 78 전민변정도감 田民辨正都監 16 전분등제 田分等第 453 전분 6등(법) 田分六等(法) 86.452 전사시 典祀寺 468, 469 전선색 典船色 351 전설사 典設司 426 전세 箭稅 407, 457, 459, 477 전세제도 田稅制度 77.84.453 전송 田訟 64,65 전시과 田柴科 21, 36, 46, 53, 58, 77, 78, 445 전의감 典醫監 425, 426, 429, 436, 468 전정연립 田丁連立. 21.48.53 전제상정소 田制詳定所 85,620 전제상정준수책 田制詳定遵守冊 620 전통선누선 全通船樓船 전폐 箭幣 4,173,190,191 전폐제 錢幣制 177 전품분등법 田品分等法 77,81,86, 416, 449, 452 전함도감 戰艦都監 334 전함사 典艦司 6,334~336,424,425, 531 절전 折錢 149 점 店 512 점퇴 點退 8.9 접장 接長 158, 159, 162, 167, 169 정도전 鄭道傳 23, 24, 361, 524 정몽주 鄭夢周 523

정액세법 定額稅法 87	조전 漕轉 523,533
정역 定役 476, 477, 480	조전선군 漕轉船軍 533
정역호 定役戶 459, 470	조전성 漕轉城 523~525
정음청 正音廳 298	조준 趙浚 13, 14, 17, 18, 26, 29, 30,
정전 正田 87, 447, 448	32, 34, 57
정전법 井田法 603	조지서 造紙署 6, 295, 297, 301, 305,
정천익 鄭天益 281	306, 308, 309, 311, 315, 320, 426
정철장 正鐵匠 234	조지서 趙之瑞 248
정치망어장 定置網漁場 408,414,416	조지소 造紙所 298, 304, 305, 308,
제가량(체)제 齊價量(體)制 611,615,	312, 320
621	조창 漕倉 10, 324, 339, 449, 524, 525,
제도순방계정사 諸道巡訪計定使 78	527~530, 534
《제민요술》 《濟民要術》 107	조현명 趙顯命 152
제생원 濟生院 468	족종법 足種法 104,109
제용감 濟用監 181, 229, 267, 269,	종묘전 宗廟田 27,28
424, 426, 427, 512	종부사 宗簿司 32
제용고 濟用庫 427	종조척 縱造尺 615
제지법 製紙法 309, 311~313	좌고상인 坐賈商人 126
제지업 製紙業 6,294~296,309	좌사 左社→상무사 좌사 商務社左社
조례기척 造禮器尺 615	좌중 座中 139
조류양식 藻類養殖 410	좌창 左倉 33
조방적 시비법 粗放的 施肥法 3	좌창전 左倉田 39
조색포창 助色浦倉 525, 526, 532	
	주목망 柱木網 400,401
조선 漕船 333, 339, 340, 349, 350, 531,	주목망어업 柱木網漁業 384
532, 536	주소 紬所 256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361	주자소 鑄字所 298, 305, 306
조선통보 朝鮮通寶 4,108,188	주전소 鑄錢所 180
조선통폐 朝鮮通幣 188	주척 周尺 10,86,603,606,609,616,
조성도감 造成都監 495	618, 619, 623
조세 租稅 7,57	주척장 周尺長 624
조어 釣漁 7	주철장 鑄鐵匠 236, 237, 240, 251
조어업 釣漁業 408,409	주화제 鑄貨制 177
조업전 助業田 13, 14, 19, 21, 22, 25,	죽방렴 竹防簾 407
27, 28, 44, 65	준납첩 准納帖 321, 461, 463, 464
조역가 祖役價 489	줌 把 603,604
조운 漕運 10, 333, 337~339, 354,	중대선 中大船 341~345,350,353~
464, 523, 524, 531, 533, 534	355
조운선 漕運船 324, 336~340, 349	중등전 中等田 611
조인옥 趙仁沃 14,17,26	중로야 中爐冶 237

중맹선 中猛船 341, 342, 344, 345, 진대법 賑貸法 472 $350,352 \sim 355$ 중사 中祀 261 중선 中船 341~345, 350, 351, 353~ 진부 津夫 502 355 중선망 中船網 400 중선망어선 中船網漁船 400 중전척 中田尺 613 중칭 中稱 609 중형경쾌선 中型輕快船 324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113, 566 지록 地祿 440 《지봉유설》 《芝峯類說》 279 지소 紙所 294 지위전 紙位田 294 지인망어업 地引網漁業 382,401,414 진황전 陳荒田 87 지장 紙匠 6, 269, 295, 306, 317 지장위전 紙匠位田 306 지장전 紙匠田 306 지전 紙田 294.510 지전 紙廛 128, 129, 131 지주제 地主制 91 지척 指尺 80.86.452 지척제 指尺制 113 직봉 直烽 541 직역 職役 8 직역인 職役人 35 직역전 職役田 13, 21, 22, 33, 34, 39 직장 織匠 268 직전 職田 39.69 직전법 職田法 1 직조사 織浩司 270 직조장 織造匠 272 직파법 直播法 103 직파연작법 直播連作法 2 진 津 501 진강장 鎭江場 571 진고개 497 진고체수(법) 陳告遞受(法) 47,55 천신 薦新 468~470

진리 津吏 502 진리가 陳理家 616 진부전 津夫田 438 진상 進上 9.398.438.466.469.472 진상마 淮上馬 586 진선 進膳 466 진성 陳省 321.461 진성창 鎭城倉 337.525 진속군 鎭陳屬軍 219 진언상 陳彦祥 204 진전 陳田 87,90 진제장 賑濟場 512 진척위전 津尺位田 502 진헌관마색 進獻官馬色 582,583 짐 負 603.604 집경장 執經匠 270,272 집사 執事 167 집약농법 集約農法 106,113 집위장 執緯匠 270,272

[ㅊ]

차비노 差備奴 306 차사필 差土弼 90 차율수조 差率收租 451 착세 着稅 179.188 찰방 察訪 504,508,510 찰방체제 察訪體制 504 참 站 547 참선 站船 335, 337, 339 참운 站運(水運) 523,527 창고전 倉庫田 442,443 창의문 彰義門 497 채륜 蔡倫 294 채제공 蔡濟恭 128.151 천맥전법 阡陌田法 603

천역 賤役 8,480 청염장 淸染匠 268.269 천예기마금법 賤隷騎馬禁法 577 551 청초절 靑草節 천호 千戶 333 청포전 靑布廛 128, 129, 131, 147 철간 鐵干 218 체아록 遞兒祿 432 철광(업) 鐵鑛(業) 211,232 초련군 草鍊軍 231 철광역 鐵鏞役 238 초려 草料 512 철물상인 鐵物商人 240 초마선 哨馬船 324.337.338 철물 수취규정 鐵物收取規定 250 초면 草綿 279~281 초범 鈔法 187 철물 수취제도 鐵物收取制度 216, 초철소 炒鐵所 223 220, 234, 250 철물 수취체제 鐵物收取體制 252 《촬요신서》 《撮要新書》 100 철산지 鐵産地 226~228, 249, 250 최무선 崔茂宣 344 철상 鐵商 252 최윤덕 崔閏德 346 철소 鐵所 218 최항 崔恒 322 철소간 鐵所干 218, 219, 225, 235 추경 秋耕 99 철야 鐵冶 225 추염 秋鹽 379 철장 鐵匠 234.236 추왜별맹선 追倭別孟船 341.342. 철장 鐵場 217, 223, 225, 234, 238, 251 344, 345 철장관 鐵場官 218, 219 추왜별선 追倭別船 341, 342, 344, 345 철장도회 鐵場都會 219, 222, 223, 축마우료식 畜馬牛料式 551 $225,228 \sim 234$ 춘염 春鹽 379 춘추양등의 공철 春秋兩等의 貢鐵 철장도회관 鐵場都會官 240 철장도회소 鐵場都會所 223 239 철장도회제 鐵場都會制 5,220~224, 춘추양등 철장도회역 春秋兩等 鐵場都 $229, 237 \sim 241, 244 \sim 248, 250$ 會役 239 철장세 鐵場稅 234 춘추양등 철장역 春秋兩等 鐵場役 철장역 鐵場役 232, 233, 237~240, 238 244, 247 충남우도 저산8구 상무사 우사 忠南右 철장제 鐵場制 216, 218~220, 222~ 道苧産八區商務社右社 155 224, 231, 234 충청우도 저산8구(음) 상무사 좌사 忠淸 철장제 혁파 鐵場制革罷 236 右道苧産八區(邑)商務社左社 164. 철장취련군제 鐵場吹鍊軍制 219,220 170 철전 鐵錢 172, 173, 175, 186 충황대책 蟲蝗對策 99 철호 鐵戶 217 충훈부 忠勳府 462 첨사부 詹事府 294 취련군 吹鍊軍 218~221, 223, 234. 첨저(형)선 尖底(型)船 347 236, 240, 246
 230, 240, 240

 취련군제 吹鍊軍制
 247
 첨절제사 僉節制使 214 천총제 僉摠制 555 친잠례 親蠶禮 261, 262, 265 《청구시장》 《靑丘示掌》 128 〈친작응행절목〉 〈親蠶應行節目〉 265 《청금록》 《靑衿錄》 155,159 칠십영좌례 七十領座例 139

침장고 沈藏庫 425, 427 칭 稱 608, 609 칭량금은화 秤量金銀貨 172 칭량은화 秤量銀貨 173, 182, 203

[7]

쾌선 快船 342, 343, 345, 350, 353 클링커 이음(clinker joint) 방식 323

[≡]

《탐라순력도》 《耽羅巡歷圖》 565 《탐영사례》 《耽營事例》 565 대묘조성도감 太廟浩成都監 211 태평원 太平院 512 토관 土官 440 토마 土馬 582 토지국유의 원칙 土地國有의 原則 38 토지국유(제) 土地國有(制) 1. 23 토지분급규정 土地分給規程 36 토지사유제 土地私有制 1 토지소유권 土地所有權 445 토지절급 土地折給 32 토지지배관계 土地支配關係 19,20 통양창 通陽倉 337,524.525 통직 涌織 270

[五]

파 把 603,604 파발제 擺撥制 10,547,548,577 판도사 版圖司 19,64,66 판옥선 板屋船 6,356,358~360,367 판적사 版籍司 424 팔방통화 八方通貨 191 팔의전 八矣廛 128 패조곡 稗租斛 611 평선 平船 343,356,358~360 평시서 平市署 127, 129, 149, 150, 425 평식원 平式院 623 평저선 平底船 323, 328, 337, 347, 531 포백세 布帛稅 179, 188 포백척 布帛尺 10, 616, 617, 623 포전 布惠 128.129.131.134 포전전안 布廛廛案 134 포화 布貨 4,178,179,181,182,185, $188 \sim 190$ 표준척 標準尺 600 풍선색 豊船色 531 풍저창 豊儲倉 214, 336, 425, 442, 443, 450

[5]

하등전 下等田 611 하륜 河崙 177, 417, 524, 527 하양창 河陽倉 337 하원나루 河源渡 501 하전척 下田尺 613 하차 下差 158 한강나루 漢江渡 501.502 한강의 진도 漢江의 津渡 502 한량관 閑良官 43~45.48 한명회 韓明澮 246, 247, 419 한산도공원 閑散都公員 159 한선 韓船 6,322,323,327,337,338, $346 \sim 349,352$ 한선구조 韓船構造 323, 327~329, 338, 347 한선구조법 韓船構造法 324,327,352 한성부 漢城府 157, 214, 497, 552 〈한성부완문〉 〈漢城府完文〉 157.168 한양 漢陽 125, 522, 524, 536 〈한양가〉 〈漢陽歌〉 131 한양의 가로망 漢陽의 街路網 495, 496 한언 韓堰 246 한인전 閑人田 46

한전 早田 87,116 한전농법 旱田農法 103, 106, 117 한전농업 早田農業 2,112 합사장 合絲匠 268 해동통보 海東通寶 172 해룡창 海龍倉 337 해릉창 海陵食 337, 525 해망인 海望人 539 해세 海稅 432 해수직자법 海水直煮法 6.376.380 해운 海運 10,523,527,528,530 해운판관 海運判官 530 해작군 海作軍 471 행랑세 行廊稅 3 행랑시전 行廊市廛 124 행랑조성도감 行廊造成都監 211,235 행상 行商 122.126 행행방물 行幸方物 467 향공 鄕貢 441 향리 鄕吏 440, 446, 457, 463, 464, 481 향시 鄕試 121, 122, 153 《향약집성방》 《鄉藥集成方》 389 향역 鄕役 481 향직원 鄕職院 273 허응 許應 27,30 허조 許稠 615 협호 挾戶 73.76 혜민국 惠民局 468 혜민서 惠民署 425, 426, 429, 436, 468 혜상공국 惠商公局 157.167 혜상공국관등서책 惠商公局官等書冊 169 혜상공국서 惠商公局序 165,166 호구안 戶口案 485 호마 胡馬 590

호수 戶首 71,483,487,488 호역 戶役 476,477,488 호적법 戶籍法 486 호패법 戶牌法 501 홍무구제 洪武舊制 615 홍염장 紅染匠 268, 269 홍제원 弘濟院 512 화경법 火耕法 105 화선 和船 327.333 화자거집전민추고도감 火者據執田民推 考都監 16 화회체아수직 和會遞兒授職 306 환상 還上 472 활인서 活人署 436 황국협회 皇國協會 167 황원전 荒遠田 45.46 황종률관 黃鐘律管 623 황종률관장 黃鐘律管長 616 황종법 黃鐘法 615 황종음 黃鐘音 616 황종척 黃鐘尺 10,618,622 회계사 會計司 424 회환농법 回換農法 102, 103, 117 횡간 橫看 7.9.430.437.469 횡첨척 橫忝尺 615 후릿그물 揮罹網 401 후릿그물어법 揮罹網漁法 382 휴한법 休閑法 2, 7, 79, 105 휼양전 恤養田 46, 47 흥덕왕 복식금제 興德王 服飾禁制 254 흥원창 與原倉 337, 525, 526, 532 흥인문 興仁門 497 흥천사 興天寺 554

집 필 자

개	<u>g</u>	李載龒
	I. 토지제도와 농업	
	토지제도 ····································	
	Ⅱ. 상 업	
2. 3.	도시상업 지방상업 화폐의 유통 무 역	劉元東 元裕漢
	Ⅲ. 각 부문별 수공업과 생산업	
1	야철수공업과 철광업	柳承宙
	방직업	
	제지업	
4.	조선업	金在瑾
5.	염 업	申芝鉉
6.	수산업	朴九秉

Ⅳ. 국가재정

1. 재정관계관서李載龒		
2. 중앙재정 李載龒		
3. 지방재정 ······················李載龒		
4. ヱ 세 李載龒		
5. 공 물		
6. 진 상李載龒		
7. 환 곡 李載龒		
8. 역李載龒		
V. 교통·운수·통신		
V 10 E 0 E		
1. 도로의 정비 崔完基		
2. 역 · 원제의 정비 崔完基		
3. 수상교통과 조운 崔完基		
4. 통신수단의 관리 崔完基		
5. 마 정 南都泳		
VI. 도량형제도		
1. 옛 도량형제도 朴興秀	-	
2. 세종조의 도량형 통일 朴興秀		
3. 광무 6년의 도량형제도 개혁		

한 국 사

24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1994년 12월 24일 인쇄 정부간행물심의필 1994년 12월 30일 발행 (No. 94-14-7-7)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서계동 260-1

전화 730-8670